ver 2.0

서울특별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eoul
Welfare Facility
Universal Design
Guideline

종합사회복지관

SOCIAL WELFARE CENTER

서울특별시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친화적 관점에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여
공간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및 응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삽입된 그림 및 사진은 해당 가이드라인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현장 사례들입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롭게 계획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각 시설의 개보수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공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계획이 더해져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ver 2.0

서울특별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eoul
Welfare Facility
Universal Design
Guideline

종합사회복지관
SOCIAL WELFARE CENTER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의 의의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감성을 디자인을 통해 배려하는 '디자인복지'를 향한 첫 걸음이다.

각기 다른 행태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야말로 기능적 하드웨어의 제공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시정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체, 행동, 상황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배려로 모두(ALL)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원칙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복지시설의 현장에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복지시설과 건축에 대한 법규와 규정이 바뀌었고, 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담당자들도 단순히 최소기준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수준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태도변화를 보여왔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고도화를 통해 그동안 최소한으로 제시된 디자인 원칙들을 이용자 중심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더욱 상세하게 풀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서 소개 하는 디자인 원칙들이 복지시설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보수, 기능보강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건축 및 시공 관련업자들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의 표현 및 법규와의 연관성, 디자인 원칙의 근거와 배경, 관련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에 있어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복지환경 디자인이 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건축설계 및 시공 담당자와 복지시설의 담당자, 시설 이용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적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수준높은 복지시설로의 질적 성장과 발전,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본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각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신체, 행동, 상황별 차이를 배려하여 다양한 이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이용자 친화적 서울시 복지시설 환경 디자인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의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시설 전반이다.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칙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이용자(EACH)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모두(ALL)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복지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지원성, 안전성, 인지성, 건강성, 지속가능성'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원리를 적용하여 복지시설의 수준 향상
-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로 활용
- 이용자 친화형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서울의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물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교육자료로 활용
-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서울의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 디자인 원칙을 공유하는 도구로 활용
-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의 지침으로 활용

목 차

1. 들어가기

1. 시설의 이해 12
1.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12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14
3. 서울시 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15

2. 이용자의 이해 16
1. 이용자의 정의 16
2. 이용자의 유형별 특성 16

3. 기본방향 19
1. 편안하고 친근함이 느껴지는 생활 환경 19
2.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지원 환경 19
3. 안전한 공간 환경 계획 20
4.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의 유지 20
5.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교류 20

2. 환경 요소

1. 외부 마감 24

2. 내부 마감 26
1. 바닥 27
2. 벽 30
3. 천장 32

3. 문과 창 35
1. 출입문 36
2. 실내 출입문 39
3. 창 42
4. 문 손잡이 43

4. 색채 44

5. 조명 49

6. 사인 52

7. 가구 및 수납공간 58

8. 기타 63
1.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 63
2. 환기, 온도, 소음 65

3. 외부 접근 공간

1. 주차장 68
2. 외부 출입구 71
3. 진입로 74
4. 외부계단 76
5. 경사로 78
6. 가로시설물 79

4. 내부 진입 및 이동 공간

1. 출입구 82
2. 로비 84

5. 내부 이동 공간

1. 복도 90
2. 엘리베이터 94
3. 계단 99
4. 경사로 102

6. 내부 기능별 공간

1. 식당 및 주방 106
2. 공용공간 108
3. 프로그램실 111
4. 관리 및 서비스 공간 119
5. 화장실 및 욕실 121

7. 특화 공간

1. 특화 공간 132
2. 치유 공간 136

부록

1. 관련 법규 및 규정 144
2. 참고사례 및 인터뷰 166
3. 체크리스트 170

출입문은 투시창과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명확하게 인지가능 하도록 계획한 출입구

1
들어가기

1. 시설의 이해 12
1.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12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14
3. 서울시 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15

2. 이용자의 이해 16
1. 이용자의 정의 16
2. 이용자의 유형별 특성 16

3. 기본방향 19
1. 편안하고 친근함이 느껴지는 생활 환경 19
2.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지원 환경 19
3. 안전한 공간 환경 계획 20
4.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의 유지 20
5.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교류 20

1 시설의 이해

1.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주택	
		의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여가	· 노인복지관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관련법령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화 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기 능	사업 분야	사 업 및 내 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 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보호	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 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문화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원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기 능	사업 분야	사업 및 내용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 2019.06. 12 개정)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020, 보건복지부)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서울시 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서울시 사회복지관 유형별 현황 (보건복지부, 2018년 12월)

(단위 : 개소)

지역	기관수	지방 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법인
서울	98개	0	75	13	10

*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포함

2 이용자의 이해

1. 이용자의 정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지닌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주된 이용자로 정의한다.

보건복지부(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0p

2. 이용자의 유형별 특성

1) 유아·아동 및 청소년

- 운동, 인지, 사회 및 정서적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다.
- 같은 연령의 아동은 물론 다른 연령의 아동, 성인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한 규칙과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 감정을 소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갈등을 소절하는 능력을 발선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영아기	유아기 전기	유아기 후기	아동기 전기	아동기 후기	청년기
뇌·신경계가 급 발달하고 울고 웃는 언동으로 욕구를 표현함.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쌓임.	운동·언어 능력이 발달, 정서의 핵을 완성하고 자아가 싹터 자기 주장을 함.	손발 동작이 안정됨. 자주성이 높아져서 뭐든지 스스로 하고 싶어함. 친구와 집단 놀이가 가능함.	손끝의 정교함이 생기고 체력이 붙음. 학습 등에 근면하게 임하거나 생물의 사육을 할 수 있음.	남녀차이나 프라이버시를 의식, 이론적 지력, 문화적인 감성이 갖춰짐. 친구의 존재가 커짐.	어른을 의식하고 자기를 모색함. 신번 관리나 사회적 대응을 몸에 익힘. 제2차 반항기.

대략적인 학령 — 유치원 — 초등 저학년 — 초등 고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아동발달단계]

2) 장애인

· 장애 유형별로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 분	정의
지체 장애인	- 한 팔,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다리를 가로발목뼈 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장애인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 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 장애인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령 장애인	- 앞서 소개된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중 노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령장애인은 다시 '고령화된 장애인 ' 과 '노화과정 장애인 ' 으로 구분함

3) 노인

·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감각이 무뎌지며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심리적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 노화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구 분		증상 및 질병
근골격	근육	- 근력저하, 지지능력저하, 잡기능력저하, 민첩성 떨어짐, 지구력 저하, 장시간 서있기 곤란
	뼈 관절	- 뼈의 약화, 허리 굽음, 신장감소, 관절경직 및 기형, 관절염, 보행불편, 골다공증, 앉았다 일어나기 곤란
체표면	피부	- 지문 쇠퇴, 피부 건조, 피하조직 손실, 체온유지능력 감퇴, 욕창 및 열창
휴식	수면	- 야간 수면시간 감소, 낮잠증가, 수면 중 일시적 호흡장애 발생
정신	정서	- 우울증, 불안, 피해망상, 인지장애, 사교성 및 충동성 감소, 기존의 의견 및 행동고집, 오래 사용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 증가, 능동적 문제 해결능력 감소, 자기비하
	인지	- 건망증, 학습 및 정보처리능력 저하, 조직화능력 저하, 집중력 감퇴, 과거 기억력 저하
감각	시각	- 노안, 수정체의 혼탁으로 눈이 침침하고 흐릿해짐, 백내장, 녹내장, 단차이 구별능력 저하, 유사색에 대한 변별력 감소, 야맹증, 가시거리 감소
	청각	- 이명, 청력저하, 음구별 능력 감소
	후각	- 감퇴
	촉각	- 온도식별감각 저하, 통증감각 저하
	미각	- 미각쇠퇴, 식욕감퇴
	균형	- 균형감각 감퇴, 어지러움
소화 흡수	소화	- 배고픔·갈증 감퇴, 치아결손, 소화기능 감퇴, 기초대사량 감소
	배설	- 구갈반응 감퇴, 소변량 증가, 탈수현상, 야뇨 횟수 증가, 변비

3 기본방향

1. 편안하고 친근함이 느껴지는 생활 환경

거대하고 획일적인 공간계획은 차가운 이미지를 주거나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는 분위기로 계획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적이면서도 편안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를 압도하지 않는 휴먼스케일에 적합한 건물 및 공간 규모로 조성하여 이용자가 편안하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의 일부를 보내는 장소가 되므로 시설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건물 외관부터 실내에 이르기까지 시설적인 느낌을 주는 차가운 소재 대신, 친밀감 있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전달하도록 한다.

2.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지원 환경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는 연령대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아동, 성인, 노인 등 연령에 따른 이용자의 특성 뿐만 아니라 ,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신체 및 지적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모두 이용하기 쉽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방문하는 이용자, 대중교통으로 방문하는 이용자, 자전거나 휠체어 및 유모차를 동반하는 이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이용자 동선에서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배려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 앉은 키와 눈높이 등을 고려한 가구의 형태, 조작버튼의 위치, 정보매체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정보 전달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지적능력, 연령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운 사인시스템을 계획하고, 일관된 색이나 패턴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이 때, 시각적 요소 이외에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3. 안전한 공간 환경 계획

종합사회복지관은 매일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가 방문하며, 그 중에는 안전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다수의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피가능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을 위해 시설 내외부에 물리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화재 등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경로와 대피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계획, 방재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계획하도록 한다.

4.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의 유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밀착된 시설로, 이용자들이 자주 방문하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빛, 공기, 소리 등과 관련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 내에서는 단순한 교육 및 취미 활동이 아닌 자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들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물러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중정, 정원 등을 활용한 자연통풍, 자연채광, 일조 확보 등 자연요소를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양호한 공기질의 확보, 공간의 기능에 어울리며 감성을 조절하는 자연채광 및 조명계획이 요구되며, 채광이 가능한 창의 계획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계절이나 온도변화에 따라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적, 자연적 요소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흡음 및 차음성능이 우수한 마감재의 사용, 공간의 성격에 따른 실 배치 등으로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으로 실내환경요소가 계획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교류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다양한 계층과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 편하게 오가며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원, 카페, 식당 등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전시, 장터, 공연 등 다양한 지역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홀, 광장과 같은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개방된 형태의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등 흥미를 주는 요소를 배치하여 장소에 대한에 인지성을 높이고 즐거움을 주는 공간

2
환경 요소

1. 외부 마감 24

2. 내부 마감 26
1. 바닥 27
2.벽 30
3. 천장 32

3. 문과 창 35
1. 출입문 36
2. 실내 출입문 39
3. 창 42
4. 문 손잡이 43

4. 색채 44

5. 조명 49

6. 사인 52

7. 가구 및 수납공간 58

8. 기타 63
1.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 63
2. 환기, 온도, 소음 65

1 외부 마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게 계획된 외부 마감

기본 원칙

· 건물의 외부 마감은 위압감을 주는 차가운 시설적 느낌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소재와 색채로 계획한다.

· 건물의 바닥, 식물, 외부 마감재, 좌석, 조명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건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울타리나 담장은 낮고 개방된 형태로 설치하여 아동이 건물의 내외부를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일반

· 건물 외관에 병원이나 관공서 등과 같은 시설적인 느낌의 마감재 사용이나 디자인은 피한다.

· 지역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압도하는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마감재와 색채로 외관을 디자인한다.

· 건물의 바닥, 식물, 외부 마감재, 좌석, 조명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건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울타리나 담장은 낮고 개방된 형태로 설치하여 아동이 건물의 내외부를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 모든 보행로는 휠체어와 보행보조기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표면이 단단하고 요철없이 매끄럽게 설계한다.

· 자갈돌, 흙, 모래 등의 고르지 못한 소재는 바닥 마감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 바닥이 젖거나 말라 있을 때 모두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다.

· 한낮의 햇빛 또는 가로등 조명의 빛 반사로 눈부심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한다.

색채와 패턴

· 건물 외관에 선명한 색상을 적용할 경우 쉽게 건물이 눈에 띄거나 인지가 가능하다.

· 특정 아동에게 시각적 혼란이나 방향감각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강한 패턴은 외부 마감에 사용하지 않는다.

· 바닥 표면에는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는 강한 패턴은 적용하지 않는다. (예=대비가 강한 선을 사용할 경우, 계단으로 인지할 수 있음)

유지와 관리

·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적용한다.

· 깨지고 울퉁불퉁한 표면, 느슨해진 이음부 등은 규칙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 내부 마감

벽면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원색의 대비가 강한 색이 적용된 문

기본 원칙

· 친밀감 있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 명료한 시각 대비를 통해 가시성, 방향성, 공간 인지, 표면/형태/장애물 등의 인지에 도움을 준다.
· 시각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색상이나 패턴은 가능한 한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 친밀감 있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 목재, 패브릭 등 따뜻한 느낌의 재료를 적극 활용하고, 콘크리트, 타일,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료는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 인체에 무해한 천연재료를 선택하고, 시공에 사용하는 접착제 등도 무해한 성분으로 사용한다.
· 화재를 대비하여 불연, 난연 재료를 사용한다.
· 마감재를 선택할 때, 단가 뿐만 아니라 내구성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1. 바닥

일반

- 모든 바닥면은 배수가 잘 되도록 계획하고, 미끄럼방지가 가능하며,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로 마감한다.
- 바닥 마감은 바닥면이 단단하고 평평하게 계획하며, 방향성이 없는 소재를 적용한다.
- 두 가지 이상의 바닥 마감재를 섞어서 사용할 경우, 마감재 간의 단차는 없어야 한다.
- 바닥 마감재는 안전, 기능성, 내구성, 시각적 특성, 음향성능, 환경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택이 없고 매끄러운 소재로 선정한다.
- 바닥에 적용된 소재와 마감이 주변 인접한 공간의 바닥 마감과 다를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재와 마감의 변화는 이동의 중심선을 벗어나 가장자리에 적용한다.
- 카페트를 사용할 경우, 밑깔개(underlay), 파일의 높이와 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파일이 긴 카페트와 같이 방향성을 가진 바닥 마감재는 휠체어 등의 이동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피한다.
- 쉽게 더럽혀지지 않으며, 청소하기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 바닥은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오염시 쉽고 빠르게 세척이 가능하도록 한다.
- 활동하기에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 뛰거나 걷다가 넘어져도 최소한의 부상이 발생하도록 적정한 탄력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의 사용이 많으므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등을 포용할 수 있도록 방음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시각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광택이 심하고 눈부심이 강한 재료는 선택하지 않는다.
-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는 복잡한 무늬는 피한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마감재 간에 단차 없이 매끄럽게 시공된 바닥

미끄럼 저항

· 미끄럼 저항(slip resistance)은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바닥이 젖었을 때나 마른 상태일 때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 바닥 마감재는 매끄러운 표면일수록 미끄럼 저항이 약해지고, 거친 표면일수록 저항이 높아져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우수하다.

음향성능

· 목재, 세라믹 타일, 돌, 금속, 유리 등의 단단한 마감재는 소리의 반향을 증가시키고, 카페트, 비닐, 고무, 코르크 등의 부드러운 소재는 소리를 흡수하기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간에 적용시 최적의 음향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사용자가 보다 쉽게 건물 내 서로 다른 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간별로 대비되는 음향성능을 지닌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 (예-목재와 카페트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공간 변화에 대한 청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각적 대비

· 바닥, 벽, 천장간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 이용자가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고, 단차, 기둥, 벽체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 바닥 마감재에 시각적 대비를 적용할 때는 단차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 바닥에 크고 강한 패턴의 사용은 사용자가 장애물 또는 단차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 (예-강한 대비로 구성된 선)

알아두세요!

· 목재, 세라믹 타일, 돌, 금속, 유리 등의 단단한 마감재는 소리의 반향을 증가시키고, 카페트, 비닐, 고무, 코르크 등의 부드러운 마감재는 소리를 흡수하는 특성을 지닌다.

[바닥 마감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마모륨	친환경 천연재료,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내구성, 방음, 충격흡수, 방습효과, 항균성, 난연성, 다양한 색상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무석면 타일	불연재(소방기준에 적합), 경제적, 내마모성,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다양한 색상	
전도성 타일, 대전방지타일	대전방지성, 내약품성, 내스크레치성, 치수안정성 등 기능이 다양함, 내오염성,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천연대리석 및 카펫무늬 효과	
차음시트	고탄성층의 충격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정성 우수함, 내구성, 항균성, 고후도 제품으로 소음감소 효과,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고하중물의 이동에 강함	생활공간 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고탄성 바닥 시트	충격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전성 우수함, 내소음성, 탄성,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 고하중물의 이동에 강함	
강화마루	친환경제품, 기능성(살균/항균 작용 등), 고온, 습기에 강함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친환경 마루	천연원료(옥수수, PLA(생분해성 섬유), 황토, 목분, 천연석, 구연산 등), 무해성, 내소음성, 내마모성, 열전도율 좋음 (스팀청소, 왁스 사용불가)	생활공간 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코르크 마루	자연친화적 제품이며 인체에 무해함, 충격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전성 우수함, 내구성, 항균성, 내소음성	
온돌 마루	얇은 합판 무늬목을 붙인 합판마루, 선명한 나뭇결과 질감으로 원목에 가까운 이미지 연출, 바닥접착시공으로 난방효과 높음, 뒤틀림과 변형 최소, 표면 내구성 약함, 철거시 추가비용 발생	

2. 벽

일반

· 이용자가 벽에 몸을 기대거나 손을 짚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청소하기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벽면에 서로 다른 재질을 가진 마감재를 적용하여 촉각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단, 층고가 2000mm 이상인 곳은 표면이 거친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광택이 있는 소재는 눈부심과 빛반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한다.

· 벽체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바닥높이에서 850-1000mm, 1400-1600mm 두 군데에 배경과 대비가 되는 색채나 마감으로 시각적 마크를 제공한다. 이때, 두가지 톤으로 마크를 구성하면 가시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색채와 패턴

· 가장 많이 시야에 들어오는 배경이 벽이기 때문에, 주조색은 차분한 색채로 선택한다.

· 색채나 문양은 일률적이 되지 않도록 활동단위별, 층별, 실의 성격별 등 공간에 따라 변화를 주도록 한다.

· 차분한 색채의 벽을 기본으로 하고, 나무재질의 문이나 가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 강한 패턴은 시선 분산과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한다. 특히, 안내데스크 직원과 강의실 강사 뒤쪽 벽면 등은 패턴없이 평평하고 산만하지 않게 계획한다.

· 바닥의 단차 또는 건물 내 부서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벽면에 다른 색채를 적용하여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 밝은 색상의 대비로 이루어진 선은 동선을 유도하고 사인, 길찾기 시스템 등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 벽에 창문이 있는 경우, 빛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한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벽 마감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친환경벽지	유해물질 분해, 인체에 무해함, 탈취성	생활공간 전반
천연벽지	인체에 무해함, 탈취성, 항균성, 함유성분에 따른 기능성 (바이오 원적외선, 습도조절, 피톤치드 방출)	
인테리어 타일 (인조대리석)	내오염성, 유지관리가 용이함	현관
우드패널	친환경 제품, 방염, 벽지보다 내구성 및 내오염성 좋음, 특수코팅 처리로 유지관리 용이	생활공간 (거실 등)
타일 (기능성 타일)	천연소재(흙), 유해물질 감소, 항균성, 향취성, 습도조절	생활공간 (현관, 거실 등)
규조토 보드	불연건재, 습도조절, 탈취, 항균, 실내공기정화, 차음성	생활공간 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불투명하게 유리창을 처리하여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마감

주변과 대비되는 색채와 재료로 벽면을 마감하여 이용자의 공간 인지에 도움을 주는 공간

3. 천장

일반

- 활동공간은 시설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천장구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 활동공간 외 복도, 프로그램실, 관리공간 등에는 용도에 맞는 적절한 천장마감재를 사용한다.
- 복도의 천장은 높낮이, 마감재 등을 동일 층이라도 다르게 처리하여 공간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다.
- 천장은 밝은 색채로 계획하여 빛이 반사되고 고르게 바닥과 벽면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한다.

알아두세요!

- 시각적 대비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 질감, 색채, 빛 등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거친 표면과 매끄러운 표면,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선명한 색과 흐릿한 색, 단단한 재료와 부드러운 재료 등 대비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 효과적인 시각적 대비는 명료한 가시성, 방향성, 공간 인지, 표면/형태/장애물 등의 인지에 도움을 주며, 작은 물체나 표면은 일반적으로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크고 넓은 공간에 비해 시각적 대비를 더 강하 게 적용해야 한다.
- 시각적 대비는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LRV (빛반사수치, 입사광과 반사광의 에너지비율값) 수치 값을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표면, 벽, 바닥, 천장, 문 등의 시각적 대비 효과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 두 표면 사이의 LRV 수치 차이가 클수록 시각적 대비는 두드러지며, 일반적으로 작은 물체나 표면은 크고 넓은 공간이나 물체의 대비효과와 동일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LRV수치의 격차가 더 크게 나는 소재와 마감을 선택해야 한다.

[천장 마감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텍스	불연 천장판, 무해성, 단열성, 경량성, 흡음성, 기능성, 유지보수 용이함 (유해물질 분해성능을 가진 특수도료 도장 마감)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SMC 천장재	친환경소재, 준불연재, 내구성, 내수성, 내습성, 항균성, 유지보수 용이함	화장실, 욕실
금속 천장재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가볍고 녹슬지 않는 내구성, 깨끗한 표면 마감 (알루미늄, DMC 천장재)	생활공간 전반
규조토 보드	불연 건재, 습도조절, 탈취, 항균, 실내공기 정화, 차음성	생활공간 (식당, 거실, 방)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석고보드/ 비닐 페인트 또는 천장지	내열성, 내구성 우수, 벽, 칸막이, 천장 등에 주로 시공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도장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 제품, 인체에 무해함, 내수성, 내알카리성, 내세척성, 항균성, 유지관리 용이	생활공간,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규조토	친환경 제품, 불연성, 습도조절, 단열, 방음효과, 항균성, 탈취효과 기능성(포름알데히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흡착분해, CO2 흡 수, 음이온 방출 등)	
천연칠	유기농 원료 사용, 인체에 무해함, 다양한 색상, 목재 수명 연장	
수성페인트	냄새가 적고 빨리 건조, 저렴한 가격, 조색 및 시공의 간편함, 오염이 쉽고 수명이 짧음, 접착력과 광택 약함	
비닐페인트	목재, 콘크리트 등 모든 재료에 도장이 가능한 내부용 수성도료, 은폐력, 평활성, 작업성이 우수하고 도장 및 건조시 냄새 거의 없음, 수성페인트보다 입자 곱고 무광택 표면 마감	

[타일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세라믹 타일	화산재를 이용한 세라믹 제품, 탈취효과, 습도조절, 항균, 유해물질 흡착, 유지보수 어려움, 내구성 낮음	화장실, 욕실, 청소 및 세탁실, 조리실 등
황토 타일	원적외선 방사, 탈취, 공기정화, 항균, 습도조절, 유지관리 용이	
인조대리석 타일	다양한 색상, 변색 방지, 합리적인 가격, 시공의 간편함	
자기질타일	1,250도에서 구워 온도변화에 강하고 견고함, 우수한 내구성, 강도/경도가 우수하여 바닥과 외부벽면에 주로 사용, 방수성 뛰어남	
	폴리싱 타일 – 표면에 광택이 있고 타일 이음새가 없어 청소와 시공이 간편함, 충격흡수율이 낮아 파손위험이 높고 물 묻을 경우 표면이 미끄러움	
	포세린 타일 – 견고하고 내구성 우수, 본래 색상 오래 유지함,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 연출 가능, 표면이 거칠고 타일 이음새 오염이 발생함	

[흡음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차음재	친환경 제품(황토, 맥반석 등을 첨가한 제품도 있음), 원적외선 방출, 저후도(1~4T) 고성능, 시공이 용이함	방음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실, 강당 등
나무섬유 흡음재목 /목모보드	흡음성, 난열성, 단열성, 항균성, 내구성, 내습성, 시공이 용이함, 변형이 적음	
아트보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제조, 인체에 무해함, 곡면 및 원형기둥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시공이 용이함, 형태 안전성 높음, 다양한 색상, 재사용 가능,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하지 않음	
천연면보드 / 후레쉬보드	천연섬유 면사와 독성이 없는 팽창 퍼라이트로 제작, 부드러운 질감과 다양한 색상, 불연성, 흡음성, 보온성, 보냉성, 단열성, 무해성, 사용시 안전성 시공이 용이함	
흡음판넬	친환경성, 유지관리가 용이함, 항균성, 방충성	

3 문과 창

벽, 문, 손잡이 간에 명확한 시각적 대비를 적용하여 공간 인지에 도움을 주는 색채 계획

기본 원칙

- 출입문은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설비를 갖춘다.
- 주변 배경과 명확한 시각적 대비를 이루어 이용자가 출입문의 위치와 크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유리문, 유리창 등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문과 창 주변에 원활한 접근을 위한 충분한 여유공간을 제공한다.

1. 출입문

일반

· 무거운 현관문이나 주출입구의 문에는 반드시 도어체크를 설치하고, 회전문은 설치하지 않는다.

· 외부와 통하는 주출입문에 (반)자동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열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닫히는 속도를 천천히 한다.

· 문 하단부는 휠체어 발판이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한 소재를 적용한다.

· 가능한 출입구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도록 설치한다.

· 경첩이 달린 여닫이문은 90도로 열릴 수 있게 설계한다.

· 문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는 경우 동선에 방해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문턱 단차는 10m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여 이용자의 출입시 접근성을 높인다.

· 출입구 문 안팎으로 열고 닫을 때 다른 사용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반회전문(swing door)을 설치시 문을 당기는 쪽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한다.

· 문은 양문으로 넓게 열리도록 제작하여 필요시 여유있는 출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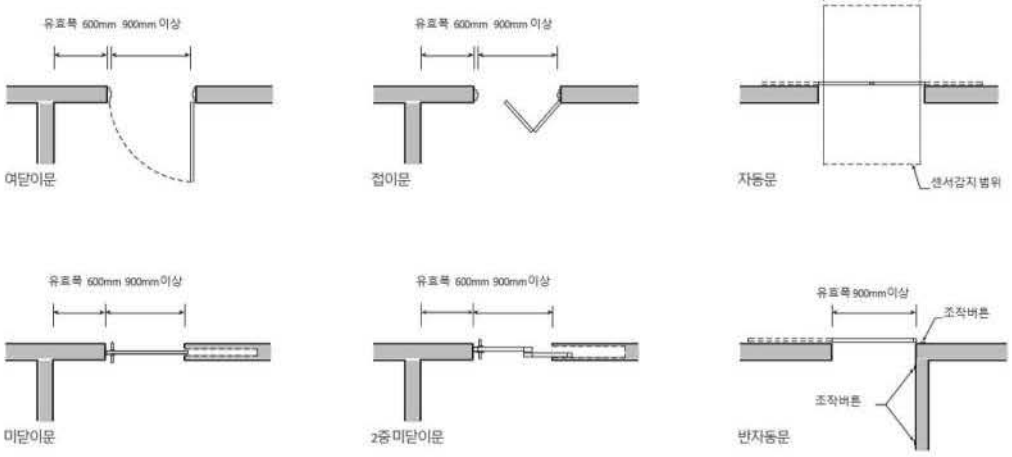

유효폭

· 현관 출입문의 유효 폭은 900-1000m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전동휠체어의 교행을 위해서는 1800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출입구 문은 최소 1000mm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유리문/투시창

· 모든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투시창을 설치하여 문 건너편의 상대방을 확인하고 내외부 공간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유리문을 통해 건물 안팎이 쉽게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하여 가시성을 높인다.

· 유리문을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해 눈높이에 명확한 시각적 마크를 표시한다.

· 통유리문의 경우, 바닥면에서 850-1000mm, 1400-1600mm의 높이에 마크를 부착하여 이용자가 보행시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시각적 대비

· 문은 시각적으로 주변과 대비가 명확하게 색채와 재질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문이 유리이거나 주변벽과 유사한 재질로 계획된 경우, 대비되는 색채로 강조하거나 장식적인 요소 등으로 구분을 한다.

· 출입구 문은 눈에 띄는 선명한 색으로 마감하여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 문짝에 벽면과 대비되는 색채를 적용하여 가시성을 높인다.

스위치/컨트롤

· 자동문을 설치하여 조작이 쉽도록 하고, 컨트롤 버튼은 접근 가능하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한다.

· 반자동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를 위하여 스위치의 위치는 문 위에 설치하지 않고 문이 열리는 벽면에 설치하되, 가급적 양쪽에 설치한다.

· 반자동문의 전방 1000mm 이내에 스위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미리 눌러 문 여는 시간을 확보한다. 단, 이 경우 전방에 설치된 스위치는 눈에 잘 띄도록 마감재와 뚜렷이 구분되게 하거나 강조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 인터폰 버튼은 바닥면에서 1000-1200mm의 높이에 설치한다.

투시창과 손잡이에 색상을 적용하여 멀리서도 인지가능 하도록 계획

2. 실내출입문

일반

- 프로그램실 등 실내 출입문은 아동이나 노인도 열기 쉽도록 무겁지 않으며, 천천히 닫히도록 도어 체크를 설치한다.
- 유리문으로 마감된 경우, 출입문을 잘못 인지하거나 유리문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방지하도록 시트지 등으로 처리하여 유리문이 있음을 알려준다.
- 손끼임 방지를 위해 문과 문틀 사이는 간격을 두고 고무로 마감한다.
- 문의 종류에 따라 문을 열기 쉽도록 측면 공간을 확보한다.
- 이중문(double door)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한다.
- 넓은 양문형(wider door, a door-and-a-half, double door)으로 계획하여 필요시 여유있는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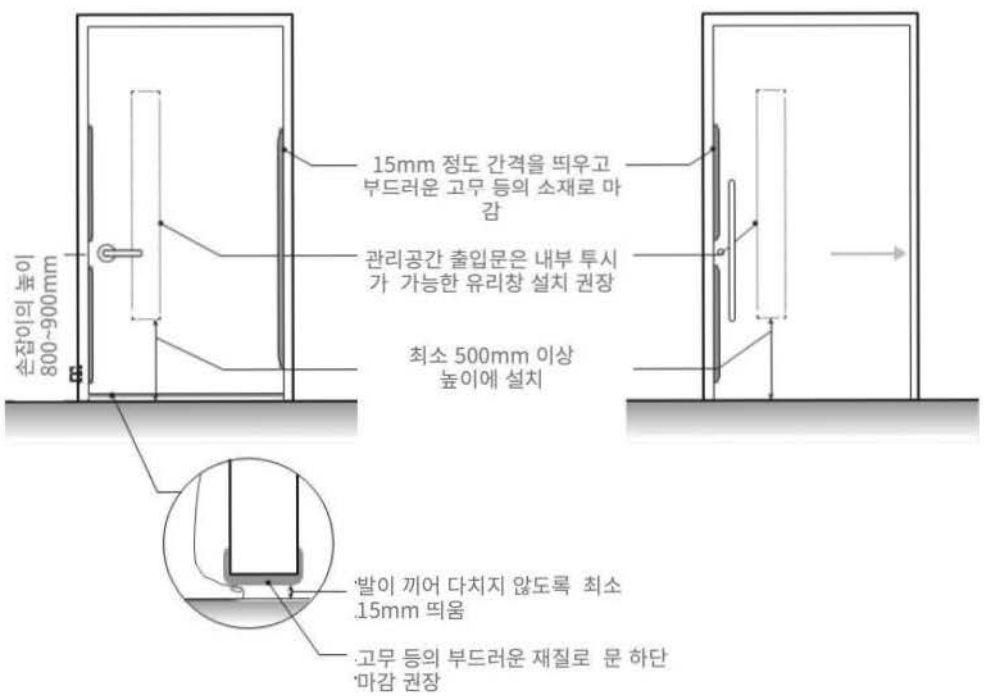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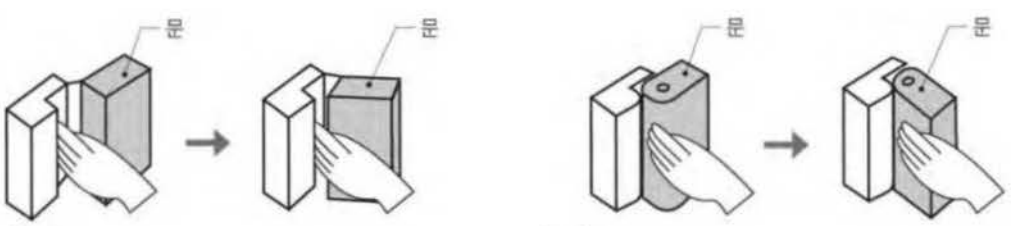

[지양]
문과 문틀 사이에 공간이 생겨 손이 낄 수 있는 구조

[권장]
회전축을 이용하여 손이 끼지 않도록 고안된 구조

방향

· 모든 문은 방 안쪽으로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비상시 대피 등 특수하게 방 바깥쪽으로 문이 열리도록 해야 할 경우, 타인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문 주변에 가로대 등의 안전 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은 건물 내에서 동일하게 통일하여 적용한다.

투시창

·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관리공간의 실내 출입문은 내부 투시가 가능한 유리창이 있는 문을 설치한다. 아동도 실내를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500mm 이상으로 하며,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 아동을 위한 공간은 각 실 하단에 낮은 높이로 시창을 설치하여 아동이 적절하게 공간 내외부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아동을 위한 공간은 문 옆에 별도의 투시창을 길게 계획하여 아동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 하단에 설치된 투시창은 강화유리를 적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로 투시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 위쪽에 가로로 된 채광창(transom)을 설치하여 건너편 사람의 움직임 정도는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시각적 대비

· 문과 내부 창문틀에 색채대비를 적용하여 공간에 시각적인 포인트를 제공한다.

· 문은 주변의 벽과 시각적으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소재와 색채를 선정한다.

· 주변환경과 대비가 되는 색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계획할 경우, 문을 열고 닫을 때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적절한 색채대비를 통해 공간 방향을 인지하고 안내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문의 종류에 따른 설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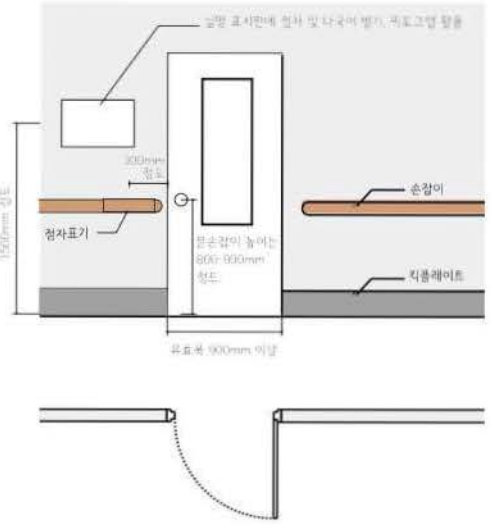

미닫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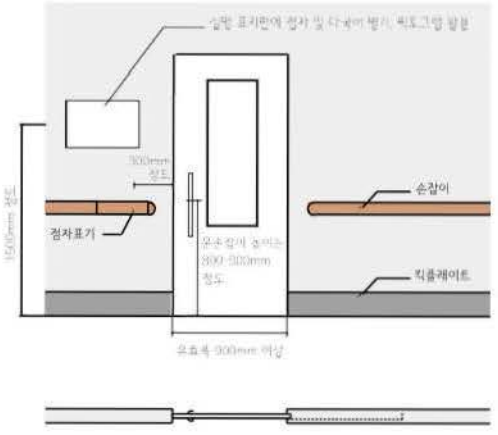

여닫이문

3. 창

일반

· 창문과 유리벽은 외부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건물 내부의 사용자로 하여금 외부의 날씨 상황, 방향 인지, 시간 확인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위치와 형태를 계획한다.

· 채광이 가능한 창을 계획하며, 동시에 에너지 효율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한다.

· 활동영역에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낮지만 안전한 창을 설치한다.

· 자연채광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코니, 중정, 온실, 천창, 고창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햇빛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의 특성 또는 활동시간에 따라 눈부심이나 햇빛의 유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접이식 차양, 블라인드, 솔라 컨트롤 글래스(solar control glass) 등의 설비를 갖춘다.

· 자연환기 및 통풍이 가능한 창으로 계획한다.

· 창은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쉽고 부드럽게 열리도록 한다.

·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창의 난간 높이는 창턱 높이가 650mm 이상일 경우, 바닥으로부터 1200mm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창턱에 쉽게 오를 수 있는 300-650m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난간 턱으로부터 850mm 이상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창의 난간 간격은 100mm 이하로 하고 특히, 아동 이용공간은 80mm 이하로 계획한다.

· 여닫이창을 설치할 경우, 몸이 쉽게 빠져 나가지 않도록 열리는 폭을 최대 100mm 이하로 한다.

· 창밖으로 떨어지는 물건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화단을 조성하거나 화분을 두어 창 주변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한다.

· 여름철을 대비해 방충망을 설치하되, 반드시 난간을 함께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한다.

· 흰색으로 도장된 창문 프레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방 안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는 효과를 주고, 짙은색으로 된 프레임은 방안으로 빛이 반사되는 양을 줄이는 효과를 지닌다. 창문이나 유리문 등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에 짙은 색으로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창문과 주변 표면은 밝은 색으로 계획한다.

4. 문 손잡이

일반

- 문손잡이는 다양한 이용자가 열기 쉽도록 손잡이의 중앙점을 바닥으로부터 800-900mm 범위에 설치한다.
- 문손잡이의 종류는 손의 크기나 악력에 상관없이 열기 쉬운 레버형 혹은 일자형으로 설치 하며, 청소관리실이나 조리실, 의료실 등 위생이 중요한 경우, 누름식으로 설치한다. 단, 노브형은 모든 문에 피한다.
- 일자형 손잡이의 경우, 잡기 편하도록 600mm 이상의 충분한 길이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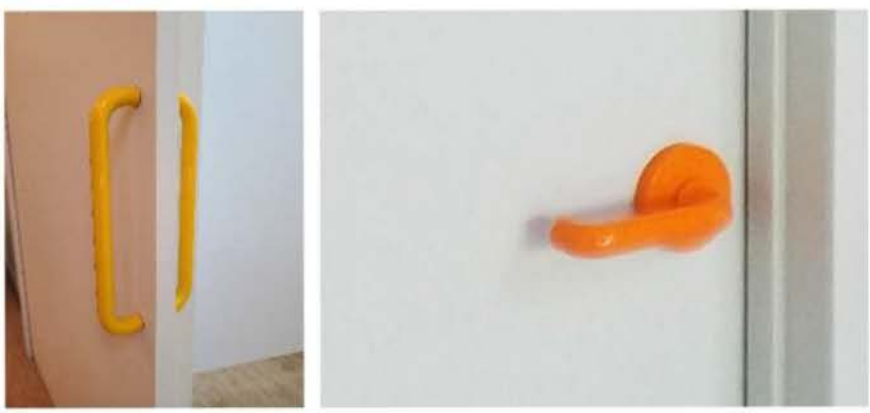

원색으로 주변 배경과 시각적 대비를 강조하고, 이용자가 쉽게 힐 수 있게 계획된 문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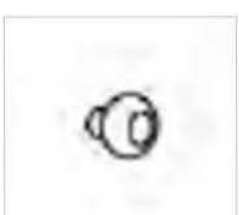

노브형

(모든 문에 지양)

[권장]레버형

실내 출입문, 직원관리 공간 등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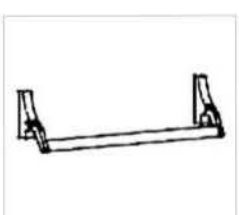

누름형

청소관리공간, 조리실 등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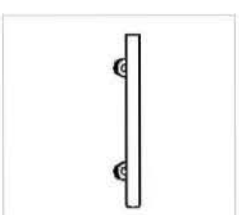

일자형

실내 출입문, 직원관리 공간 등에 적용

4 색채

배경과 시각적 대비를 이루는 경쾌한 원색의 가구와 장식

기본 원칙

· 시설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 공간이 가진 기능과 위치에 적절한 색채 계획을 적용한다.
· 색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효과를 고려한다.
· 색이 가진 시인성을 이용하여 정보전달 및 길찾기를 유도한다.
·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 명도와 채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계획한다.

[색상선택의 원리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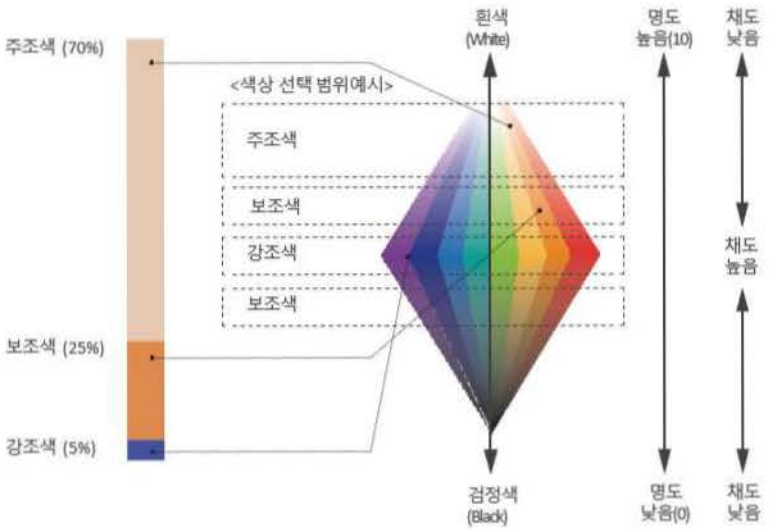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여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는 색상 선택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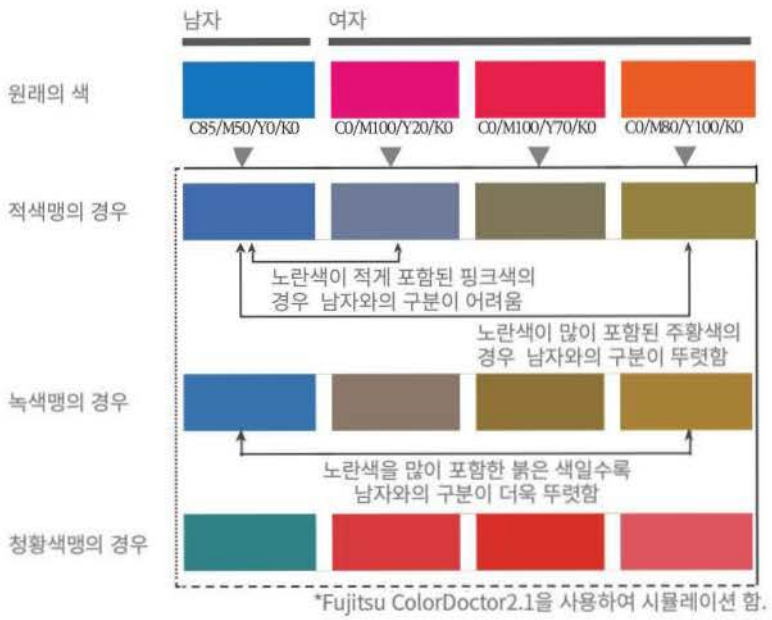

일반

- 시설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 공간이 가진 기능과 위치에 따른 적절한 색채를 조절한다.
- 전체 공간의 기능분류에 대응하여 조닝(zoning)과 그룹핑(grouping, 유사한 기능을 지닌 영역별로 구분하여 공간을 계획하는 방식)하여 색채를 계획하고, 비품에 이르는 상세한 부분도 빠짐없이 계획한다.
- 색채를 선택함에 있어 천장, 벽, 바닥과 같이 큰 영역을 먼저 결정하고 창틀, 가구, 액자 등 세밀한 부분을 결정한다.
- 공간에 사용하는 재료의 표면 재질과 패턴 등을 고려하고 유입되는 자연광과 조명에 의한 인공빛의 형태와 양도 함께 고려한다.
- 일관된 색과 패턴을 사용하여 통일성 있는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빨간색은 뜨겁다, 위험하다', '파란색은 차갑다 ' 를 의미하는 것처럼, 일관된 색을 사용하여 통일감 있는 질서를 통해 예측 가능하게 한다.
- 예술성이 강조되거나 개인의 선입견 및 취향에 따라 건물, 설비, 집기 등의 색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색이 가진 시인성을 이용하여 정보전달 및 길찾기를 도모한다.
- 색약 등의 원인으로 원래의 색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전달에 사용하는 색은 바탕과 글씨, 혹은 그림의 명도차를 배려해 알기 쉽게 계획한다.

색채 효과

- 색채계획은 공간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일차적인 기능과 사용자의 감성적 영역을 좌우하는 이차적 효과까지 고려한다.
-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생리적,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환경을 쾌적하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색채가 지니는 심리적 이미지, 온도감, 강약, 시간감 등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색이 가진 확장, 수축 등의 성질을 활용하여 공간감을 조절한다.
- 색이 가진 상징, 식별, 안전기능을 고려하여 유대감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계획한다.

색채 대비 사례 - 채도대비

노란색으로 바닥면, 문, 문 입구 바닥, 안전손잡이의 채도를 다르게 조절하여
실내공간의 요소별 시각적 대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공간

각 층별 색을 출입구와 비상구, 바닥에 적용하여 인지성을 높인 공간

배색

·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 명도와 채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조화로운 배색안을 계획한다.

· 전반적으로 차갑지 않으며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하여 주조색은 따뜻한 계열의 컬러에서 명도가 7-9 정도로 높은 범위에서 선택하되, 채도는 강하지 않게 선택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보다는 채도를 조금 더 높여 선명한 색상을 낼 수 있도록 선택하고, 명도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색으로 선택한다.

· 강조색은 채도가 높은 색을 선택하여 공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선택한다.

· 바닥면에는 강한 형태의 패턴이나 대비가 강한 색채계획은 이용자의 시각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알아두세요!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절한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0%, 25%, 5%의 비율로 설정할 때에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 주조색은 바닥, 벽, 천장 등의 마감재 색상이나 주요 가구 색상 등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색이다.

· 보조색은 각 공간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인지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닥, 벽 등의 일부에 적용하거나 소파, 커튼 등의 패브릭, 가구 등의 색상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강조색은 공간의 포인트가 되어 주의를 끌고 공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색으로 선명하고 강한 색상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알아두세요!

· 색상별 치유효과는 다음과 같다.

· 빨강색(Red) :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 주황색(Orange) :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계통, 흉부와 신장병에 도움을 준다. 식욕을 돋우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준다.

· 노란색(Yellow) : 피부, 신경계통,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희망, 기쁨의 감정을 반영한다.

· 녹색(Green) : 긴장을 완화 및 피로감 감소, 두통, 불면증, 히스테리에 효과가 있고, 생리기능의 조절로 조화로운 심리상태를 유도한다.

· 파란색(Blue) : 두통, 스트레스, 신경계통에 도움을 주며 긴장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준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 보라색(Purple) : 시력 향상, 눈, 코, 귀의 기능에 도움을 주고 심리적 에너지를 주는 색이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흰색(White) : 고통 완화에 효과가 있고, 명상 중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

5 조명

기본 원칙

-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의 종류, 설치방법, 적정조도 등을 선택한다.
- 공간에 전반조명, 국부조명, 작업조명 등 다양한 조명방식을 혼합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을 연출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도, 만족도를 높인다.

일반

- 적절한 조명 계획은 공간, 색채, 재질의 인지, 사인과 안내문의 확인 등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은 창문, 지붕창, 유리문, 유리벽, 조명 부품 등을 모두 포함하며,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자연채광은 외부환경과의 연계 및 인공조명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우수한 수준의 빛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조명계획을 검토한다.
- 조명은 실내 공간 전반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계획한다.
- 모든 조명은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작감지센서(passive infrared sensor)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조도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안전성 확보, 사용자의 접근성 편의 제공)
- 인공조명의 색온도는 최대한 자연광에 가까운 색으로 맞추어 계획한다. 자연광에 가까울수록 실내 색채가 실제 색상에 가깝게 인지되며, 색과 시각적 대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조도가 낮을 경우, 공간의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며, 눈부심과 반사, 강한 그림자 등이 생길 경우에는 시각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별로 적정 조도를 신중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물 내부 표면 마감의 시각적 대비는 조명계획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표면 마감과 조명계획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조명의 유형

- 국부조명과 작업조명은 사용자가 개별로 조도와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스트로브 라이트(strobe light)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 다운라이터(downlighter)는 디퓨저(diffuser, 부드럽게 빛을 확산시키는 반사판)를 사용하여 눈부심과 빛반사를 최소화한다.
- 업라이터(uplighter)는 눈부심 등으로 시야 확보를 방해하기 때문에 바닥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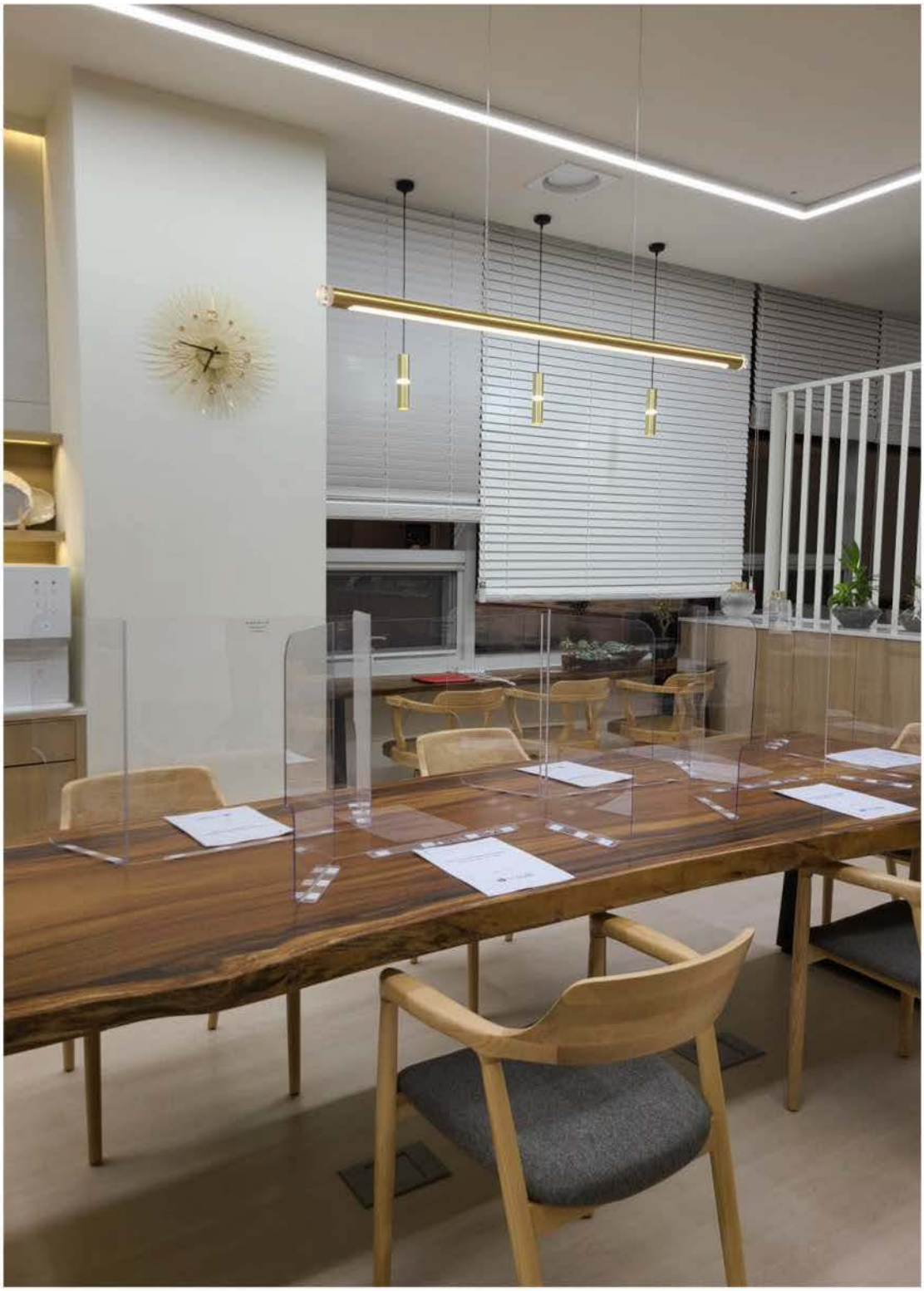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광원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계획한 간접조명

공간별 배치

- 조명 위치가 잘못 계획될 경우, 빛반사를 초래하여 공간이 실제보다 선명하지 못하게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위치를 계획한다.
-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핵심공간에서는 사람의 얼굴에 조명이 비춰지도록 위치를 계획한다.
- 사무공간에서는 빛반사, 눈부심, 그림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의 방향을 신중하게 계획한다.
- 긴 복도를 지닌 깊숙한 공간과 같이 자연채광 확보가 어렵고 인공조명이 주된 광원으로 활용되는 곳에는 국부조명과 작업조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복도의 조명은 복도의 중심선을 따라 일렬로 배치하되, 복도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횡단) 형광등을 배치하는 것은 피한다.
- 벽과 바닥에 강한 그림자를 형성하는 조명 계획은 단차가 있거나 방향 전환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 바닥면에 눈부심과 반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의 배치를 계획하고, 바닥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외부 조명

- 외부조명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각적 명료성을 높여주어 사인과 방향을 안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외부조명은 모든 출입구와 보행접근로, 사인 표지판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건물 출입구 주변에 조명을 계획시 출입구가 명확히 인지되도록 강조하고, 출입구까지의 동선을 안전하게 안내하도록 계획한다.
- 출입구 주변의 외부조명 조도는 내부조명과 연계하여 사용자가 건물 출입시 급작스러운 조도 변화로 불편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외부 계단과 램프 조명은 계단과 램프 경사면이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위치를 고려한다.
- 바닥면 가까운 곳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 전구 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투광조명등(flood light, 야간 경기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강력한 조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 보행로를 따라서 조명이 고르게 비치도록 계획한다. 보행로의 경우 평균 조도는 30lux를 유지하도록 하고, 출입구와 계단, 램프는 100lux의 조도를 유지한다.
- 옥외공간의 통로 조명은 보행로를 밝히는 것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램프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계단이나 경사가 심한 곳의 조명 설치에 유의한다.
- 옥외 조명기구는 기후, 온도, 오염에도 강한 것으로 선택한다.
- 조명은 눈부심, 빛반사,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야외 놀이터에 충분히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아동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바닥에 설치하는 조명은 눈에 직접적으로 광원이 비치거나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조명은 고르게 빛이 확산되는 것을 선택하되 진입로에는 30lux의 조도를 확보하고, 출입구, 계단, 경사로는 100lux의 조도를 유지한다.

6 사인

기본 원칙

· 사인은 어떤 방향에서도 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하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한다.
· 이용자의 언어, 지적능력, 연령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운 사인시스템을 계획한다.
· 시설의 안내정보매체는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 안내표지판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와 감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고려한다

[사인의 유형]

정보사인

· 대지 또는 건물의 전반적인 안내 기능
· 건물 내외부의 정보를 모두 포함 (예) 지도, 다이어그램, 안내표지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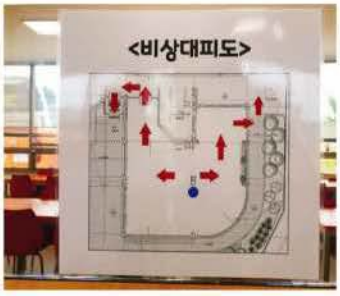

층별 비상대피 안내 사인

방향사인

· 대지 건물 내부의 방향 안내를 담당
· 화살표를 포함 (예) 목적지를 안내하는 사인보드

층 방향 표시 사인

식별사인

· 특정 목적지를 지정하여 알려주는 기능

· 화살표 없이 특정 건물, 방, 시설, 서비스 등을 지칭 (예) 건물명, 방이름, 숫자 사인 등

층별 색상이 적용되어 일관된 색상으로 계획된 해당 층의 안내 사인

의무사인

· 건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인 (예) 소방안전, 비상대피, 건강과 안전 표지판 등

비상대피와 관련된 안내 사인

알아두세요!

· 심볼 : 특정 대상의 특징을 상징화하여 단순화한 그래픽 마크

· 픽토그램 : 특정 시설물, 장소 따위의 성격을 나타낸 그래픽 마크

일반

· 건물의 위치와 출입구의 방향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시스템을 계획한다.

· 이용자의 언어, 지적능력, 연령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운 사인시스템을 계획한다.

· 시설의 안내정보매체는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 건물 내에는 방향 인지 및 동선 유도를 위해 평면도 또는 지도를 제공한다.

· 지도나 평면도에는 정보안내센터, 위생시설, 휴게공간, 통로와 동선, 주차시설 등 핵심 시설이 표기되어야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길찾기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촉지도를 제공한다.

· 최대한 간결한 디자인과 시설명이 눈에 띌 수 있을 정도의 최소 크기로 설치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 엘리베이터는 해당층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정면, 측면, 바닥면, 엘리베이터 맞은편 등 다양한 곳에 두 군데 이상 층수의 사인을 부착하여 어느 위치에서든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인 시스템은 최소로 제공하되, 갈림길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서는 알아보기 쉽고 친숙한 형태의 표지판을 제공한다.

· 사인은 어떤 방향에서도 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하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한다.

· 비상구나 비상기기, 화장실 등의 위급하거나 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눈에 잘 들어오도록 사인을 계획한다.

· 사인의 설치높이는 종류와 크기, 공간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아동이나 휠체어 사용자도 보기 쉽도록 사인물의 하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900-1200mm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어두운 상황에서도 안내사인이 보일 수 있어야 하며, 대피동선과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동선이 긴 경우에는 사용자의 심리적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적인 간격 및 반복적으로 방향 안내 사인을 배치한다.

· 모든 사인은 200lux 정도의 광원으로 고르게 비춰져야 한다.

· 사인의 표면 마감은 광택이 있는 소재는 반사될 경우 눈부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택이 없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다.

정보전달 방식

· 문자로 작성된 안내표지판 대신에 좌석, 식물, 조각상, 보행로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설적인 느낌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길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화장실 등의 특정공간을 알리는 소리, 향기가 있는 식재, 촉감이 다른 마감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는 시각정보매체 뿐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특정 공간에 특정 소리, 향기, 촉감이 다른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공간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안내표지판 뿐만 아니라 마감재, 가구 및 설비 등을 통해 다양한 감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인지하는 요소로 계획할 수 있다.

문자

· 사인에 들어갈 단어는 한 단어 또는 짧은 문장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선택한다.

· 축약어는 사인에 사용하지 않는다.

· 사인의 명확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은 고딕체를, 영어는 산세리프체를 사용한다.

· 과도하게 장식적이거나 복잡한 글씨체, 너무 두꺼운 굵기, 글자사이 간격이 매우 좁거나 이탤릭체로 쓰인 글자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인 제작시 사용하지 않는다.

· 모든 사인에는 동일한 폰트(글씨체)를 통일하여 적용한다.

· 영어를 사용할 경우, 단어 또는 짧은 문장은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인에 숫자를 표기할 시에는 로마 숫자는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사인의 글자나 숫자 크기는 크고 알기 쉽도록 표기하며, 아동의 눈높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한다.

· 메시지와 방향 안내는 간결하고 익숙한 단어와 심볼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심볼/픽토그램

· 해당층의 인지도와 기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픽토그램을 병행하여 사인을 제작한다.

· 픽토그램이나 그림 등을 적극 이용하되, 의미 없고 애매모호한 그림이나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 공간구성, 설비, 비품 등은 예측가능한 위치와 구조를 가지도록 계획한다.

· 사인에 심볼을 사용할 시에는 [2016 서울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시각적 대비

· 층별 주조색을 선정하여 사인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거나, 바닥이나 벽 마감재에도 적용하여 층별 공간의 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화장실은 층별로 같은 색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모든 사인은 배경과 글자, 숫자 등 사용된 색상 간의 명확한 대비를 주어 인지하기 쉬워야 한다.

· 문자와 심볼은 배경색과 시각적으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가 강한 색으로 계획한다.

· 사인물의 위치와 표시를 강조하기 위해 테두리에 대비가 강한 색으로 선을 표시할 수도 있다.

· 색맹, 인지장애 등을 위해 층별, 부서별로 사용하는 색채는 유사색상을 지양하고 서로 명확하게 다른 색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시설명 안내사인

· 지주형 시설명 안내사인은 진입로 동선상의 결절점에 설치하여 눈에 띄기 쉽게 한다.

· 다양한 진입방향에서 눈에 띄기 쉬워야 한다.

· 야간 인지성을 위해 시설명이 눈에 잘 띄도록 조명을 함께 설치한다.

·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의미 없는 장식적 요소는 배제하고, 최대한 간결한 디자인과 시설명이 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최소 크기로 설치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촉지도

· 주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되, 방풍실 혹은 로비공간 내에 위치하여 비, 추위 등에 관계없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 촉지도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으로 안내해야 한다.

· 촉지도의 내용은 층별 안내도와 함께 화장실, 안내실 등의 주요공간을 만질 수 있는 도면으로 삽입하여 전반적인 공간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 촉지도에는 반드시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피커 및 호출버튼을 설치한다.

종합안내도

· 처음 방문한 사람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 쉽도록 주출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눈에 잘 띄는 위치(방풍실 혹은 주출입구에 들어섰을 때 보이는 로비공간의 벽)에 각 층별 실안내도를 포함한 종합안내도를 설치한다.

· 아동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보기 쉽도록 사인물의 하단 높이는 최대 900-1000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공간의 규모 및 설치 위치에 따라 다르나 조금 떨어져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고, 배경색과 글자색의 대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게시판

· 종합게시판은 충분한 면적으로 눈에 잘 띄는 로비공간에 계획한다.

· 각 층의 엘리베이터 홀이나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공간의 벽, 혹은 프로그램실 주변에 작은 게시판을 설치하여 게시물이 미관을 망치거나 시인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방향유도사인

· 각 실이나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위치 및 방향을 안내하는 방향유도사인은 주로 천장에 설치하거나 벽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

· 갈림길, 코너 등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결절점 뿐만 아니라 미리 찾아가는 실의 위치를 짐작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나왔을 때 보이는 지점에도 설치해야 한다.

· 천장에 설치할 경우, 조명과의 위치 및 반사가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 빛 반사로 인해 사인이 읽히기 어렵지 않도록 한다.

· 걸어가면서 방향을 확인할 때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글자의 크기를 충분히 고려하고 배경색과 글자색의 대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화살표의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화살표를 충분한 크기와 형태로 해야 한다.

층별 안내도

·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층별안내도를 설치한다.

· 현재 층을 구별되게 표시하여 인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아동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보기 쉽도록 사인물의 하단은 바닥으로부터 최대 1000m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별안내사인

· 각 실마다 부착되어 실명을 안내하는 실별안내사인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사인과 측면에서 걸어오며 볼 수 있는 측면 사인을 함께 설치한다.

· 실명은 글자 뿐만 아니라 실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림을 함께 사용하여 지식이나 이해정도에 관계없이 알기 쉽게 한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각층 안내와 게시판

7 가구 및 수납공간

핸드레일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는 복도 수납장

기본 원칙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서리가 둥근 형태 및 목재, 쿠션 등의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된 가구를 선택한다.

·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가구의 잦은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동 가능하고 쌓아서 보관할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선택한다.

·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 특성과 크기를 고려하여 손잡이, 스위치, 버튼 등의 위치를 계획한다.

일반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 앉은 키높이와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가구의 형태를 선택한다.
-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가구를 선택한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모서리에 충격을 방지하는 부드러운 재질의 마감재를 덧대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사이즈를 고려하여 손잡이, 스위치, 버튼 등은 누구나 손에 닿아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점을 바닥으로부터 800-1200mm에 설치한다.
- 가구, 비품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부딪쳐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목재 등 부드러운 재료와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는 형상으로 하여야 한다.
- 청소가 용이하도록 단순한 디자인과 재질을 적용한 가구를 선택한다.
- 손잡이 등 부속 철물은 시각적으로 주변 배경과 대비가 되도록 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계획한다.
- 옷걸이나 벽걸이는 앉은 상태에서도 손이 닿을 수 있어야 하고, 벽걸이는 바닥면에서 1200-1700mm 범위 내에 높이를 계획한다.
- 옷걸이는 바닥면에서 1370mm의 높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에 단차를 두지 않는다.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구와 수납겸용 의자로 계획한 일체형 가구

의자

· 프로그램실, 식당 등에 배치되는 의자는 넣고 빼기 쉽도록 가벼워야 하며, 넣고 뺄 때 쥐기 편한 손잡이나 홈이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 의자 선택 시 테이블의 다리 사이 간격에 유의하여 적절한 너비의 의자를 선택해야 한다. 테이블 다리 사이에 의자가 모두 들어갈 수 있고, 너무 꽉 끼지 않도록 하여 의자를 넣고 빼거나 앉을 때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의자 배치나 이동이 잦은 프로그램실 등에 놓이는 의자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고정 가능한 바퀴나 두 개의 다리에 바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고, 보관 시 쌓을 수 있어 점유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의자를 선택한다.

·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실에는 아동의 신체크기를 고려한 가구를 선택한다.

· 아동을 고려한 의자 높이는 300-400mm이며, 폭은 300-450mm이 적절하다.

·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높이가 약 300mm, 폭은 약 300mm의 유아용 의자를 별도로 선택한다.

테이블

· 의자 상판으로부터 테이블 상판의 하단까지의 이격은 250-300mm를 유지한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테이블 하부에 무릎이 들어가고, 지지대 등에 발판이나 발끝이 닿지 않도록 하며, 다리 사이의 간격에 유의한다.

· 테이블의 이동이나 배치의 변형이 잦은 프로그램실의 경우에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고정 가능한 바퀴가 부착된 테이블을 선택하고, 보관 시 점유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테이블을 선택한다.

수납공간

·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각 실마다 설치한다.

· 가구의 문이 여닫이 문일 경우, 아동이 매달리는 등 장난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고하게 제작된 가구를 선택하고,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 수납장, 신발장 등의 여닫이 문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천천히 닫히는 하드웨어가 장착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하며, 문 모서리에 고무패드 등의 부드러운 재질을 부착하여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출된 경첩에도 손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가구 서랍의 경우, 적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열 수 있도록 레일이 달린 서랍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빠르게 닫혀 손이 끼지 않도록 닫히는 속도가 조절되는 하드웨어가 장착된 제품을 선택한다.

· 문손잡이는 잡고 열고 닫기 쉬운 형상과 크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문손잡이의 높이는 중심점이 바닥으로부터 800-900mm에 위치하도록 한다.

· 문손잡이는 손을 걸거나 끼울 수 있는 바형을 권장하며, 문에 매립된 형태나 구형으로 돌출된 형태는 잡기 어려우므로 피한다.

· 창고를 계획하여 적절치 못한 장소에 물품이 방치되어 통행에 방해를 주고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수납공간은 찬장 또는 벽장, 서랍, 선반 등 다양한 형태와 유형을 포함한다.

· 수납공간은 장애물 없이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명확하게 인지가능한 곳에 배치하고, 위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수납시설은 안정적인 구조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계획한다.

· 수납시설은 주변 배경과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계획하고, 적절한 조명 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허리를 구부리기 힘든 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너무 높거나 낮은 칸에 수납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서류함이나 선반이 줄지어 배열된 경우, 수납시설과 벽 사이에는 최소 1400mm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벽체 패턴과 하부에 일부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수납장과 휴지통,음수대로 계획

8 기타

기본 원칙

-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은 즉각적으로 인지되고 접근하기 쉬우며, 작동이 단순하고 디자인이 일관적이어야 한다.
- 주변 배경과 시각적 대비를 이루어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키높이를 고려하여 위치를 계획한다.

1.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

일반

- 움직임, 온도변화, 소리 등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스위치는 수도꼭지, 조명 스위치, 문 개폐 등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 에너지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 초기 계획시 문, 창문 위/아래, 걸레받이 주변에 향후 추가 설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모든 컨트롤과 스위치는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조명 스위치는 눌러서 전원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큰 로커 스위치(rocker switch,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방식)를 사용한다.
- 조명 스위치는 개별 독립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개가 연결된 스위치(multi-gang switch)를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동작감지센서가 적용된 스위치는 에너지 절감,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
- 스위치는 15도 각도로 경사진 면에 배치할 경우 사용자의 작동이 더욱 편리하다.
- 조명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명을 여러 곳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2로(two-way) 또는 3로(three-way) 스위치(전등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점등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방식) 를 적용한다.
- 콘센트는 덮개가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 계단과 복도에 자동 점멸 조명을 설치할 경우, 타이밍 세팅은 모든 사용자의 적정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배치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 앉은 키높이와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조작버튼의 위치를 고려한다.

· 아동이나 휠체어 사용자도 손에 닿기 쉽도록 800-1200mm 높이에 스위치를 설치한다.

· 모든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은 장애물과 실 내부 코너에서 500m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조명 스위치는 문 프레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되 문 손잡이와 높이를 동일하게 계획한다.

시각적 대비

· 주변 배경과 시각적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시성을 높인다.

·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는 주변 벽과 배경에 시각적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명확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색으로 프레임을 둘러 구분을 한다.

· 색으로 스위치의 위치와 전원을 표시할 경우, 문자나 픽토그램을 함께 사용하여 표기한다. 이때 레드(red)와 그린(green)은 색 구분에 혼란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피한다. 문자와 픽토그램은 촉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환기, 온도, 소음

환기

· 환기는 자연환기, 기계환기, 공조장치(air conditioning) 등을 모두 포함하되, 가능한 한 적절한 크기와 접근 가능한 창문을 통해 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 항상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악취가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 원활한 자연환기를 위해 창의 형태와 배치에 유의하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의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한다.

· 악취 및 탈취를 위한 마감재 선정에 유의한다.

· 화장실, 주방 등은 불쾌한 냄새와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위한 창이나 설비를 반드시 갖춘다.

· 환기를 위해 창문을 계획할 시 자연채광 확보 조건을 함께 고려하고,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

· 창문의 개폐는 건물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여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열려 있는 문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기계환기와 공조장치는 필터와 먼지 배출 등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초기 제품 선택시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온도

· 계절이나 온도변화에 따라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적, 자연적 요소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냉·난방 설비를 갖춘다.

· 냉·난방 설비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선택한다.

· 건물의 향, 수목, 처마나 차양, 창 등을 이용하여 자연요소를 활용한 실내온도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간의 이용자 특성, 활동, 시간대에 따라서 쾌적함의 조건이 달라지므로 각 공간마다 온도 조절기를 설치한다.

소음

· 흡음 및 차음성능의 마감재 사용, 공간의 성격에 따른 실 배치 등으로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완만한 기울기와 안전손잡이, 지붕과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진입로

3
외부 접근 공간

1. 주차장 68
2. 외부 출입구 71
3. 진입로 74
4. 외부계단 76
5. 경사로 78
6. 가로시설물 79

1 주차장

기본 원칙

·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노인 운전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 주차장과 승하차 대기공간을 계획할 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캐노피를 설치하고 여유공간을 제공한다.

· 주차구역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 명확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동선을 계획한다.

일반

· 주차장과 승하차 대기공간을 계획할 시 이용자가 건물 출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위치와 규모를 계획한다.

· 유모차, 휠체어 등을 내리기 쉽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운전자의 수를 고려하여 가능한 충분히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 날씨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공간에 캐노피 등을 설치한다.

· 승하차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 주차구역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 명확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주차구역 주변의 보도에는 도로시설물이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

· 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단단하고 평평하며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럽게 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주차구역의 바닥면이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울기가 1/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출입구가 야간에도 충분히 밝은 조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주차장과 승하차 대기공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자전거와 유모차 보관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 주차권 발행기를 설치한 경우, 모든 사용자가 차 안에서 쉽게 손을 뻗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며, 사용법을 이해하기 쉽게 계획한다.

동선과 접근

- 건물 입구나 시설까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계획한다.
- 주차 구역과 입구 사이의 동선은 접근 가능하고 찾기 쉽게 계획한다.
- 주차장과 승하차 대기공간에서 주출입구까지 명확하게 동선이 파악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주차장과 승하차 대기공간은 주출입구 주변에 계획한다.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단차없이 평평한 보행로를 확보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에서 전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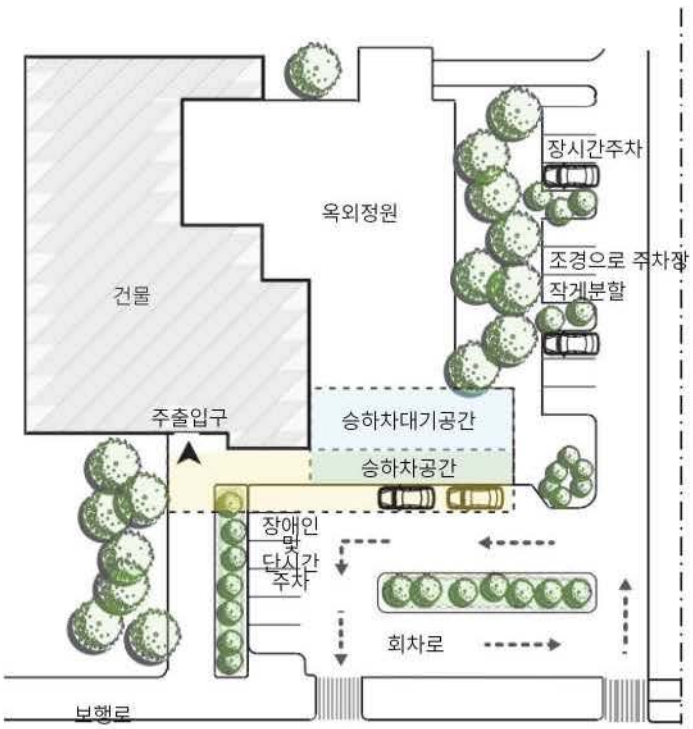

[보행안전구간과 차량의 승하차 및 주차동선을 고려한 계획 사례]

사인(진입안내)

- 주차장 진입방향을 안내하는 사인은 차량 진입 동선 상에서 눈에 잘 띄어야 한다.
- 주차장 진입구에도 방향 안내사인이 있어야 하지만, 방향을 미리 잡을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구 이전 진입로 상에 주차장의 방향과 거리 등을 안내하는 사인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하는 차량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같은 동선상에 출·입구가 존재할 경우, 각 차선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차도에서 잘 보이도록 보도 깊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높이와 크기여야 한다.

사인(구역)

- 주차장 내 구역사인은 주차한 장소를 기억하고 인지하기 쉽도록 문자, 숫자, 패턴, 색상 등을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 문자, 숫자, 패턴 등은 그 크기를 크게 하고, 색상은 적용범위를 넓게 하여 멀리서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다.
- 문자, 숫자, 패턴, 색상 등은 차량이 주차되었을 때 가리지 않는 높이로 한다.
- 문자, 숫자로 구역을 나타낼 때에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여 이용자가 기억하기 쉬워야 하며, 각각이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혼란스럽지 않게 계획한다.
- 표기 뿐만 아니라 발음에도 유사함이 없도록 하여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한다. (예: 숫자 2와 알파벳 E의 혼용 , 알파벳 B와 D의 혼용은 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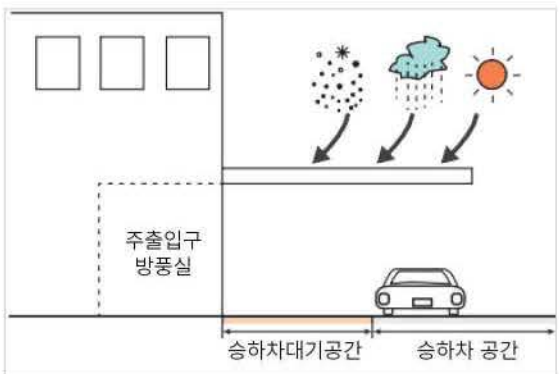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와 인접하게 승하차 공간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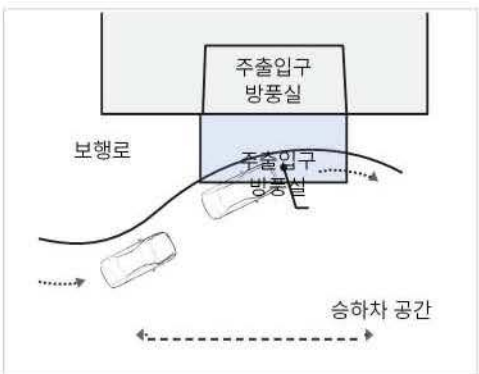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고 주출입구에서 승하차 공간까지 차양을 설치한 사례

2 외부 출입구

점자블록으로 출입구의 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고, 자전거와 유모차 보관소를 입구 주변에 마련한 공간

기본 원칙

-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자블록, 촉지도, 자전거 보관소 등 각종 편의 및 안전설비를 갖춘다.
- 명확한 방향과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대비, 캐노피, 안내표지판 등 명확한 사인시스템을 구축한다.
- 아동, 휠체어 이용자,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감과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일반

· 이용자들의 사용빈도, 이용률,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접근에 유리하도록 계획한다.

· 주차장 진입로에서부터 건물 주출입구가 명확하게 인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 주출입구는 색채, 식물, 캐노피 등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출입구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해 이용자 및 방문자를 환영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용자가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출입구는 밝고 따뜻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로 계획한다.

· 대문은 주변과 대비되는 색채를 적용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조명을 설치하되 바닥면에 고르게 조도가 분포되도록 하고, 출입구가 잘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출입문

· 여유 있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한다. (회전문 제외)

· 몸이 불편한 이용자를 부축하거나 휠체어의 출입을 위해 출입문의 유효폭은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전동휠체어가 교행하기 위해서는 1800mm 이상의 유효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전면 유리로 된 출입문의 경우, 출입구를 잘못 인지하거나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리에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유리로 된 여닫이문은 손끼임 방지를 위해 고무패드 등 부드러운 소재를 덧대어 마감하거나 손보호대를 설치한다.

바닥 마감

· 비나 눈, 흙을 털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할 경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매립하여 바닥면과 평평하게 마감한다.

· 노인의 안전한 이동 및 활동을 위해 바닥의 단차를 없애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완화한다.

공간 계획

· 이용자의 편의 및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위해 자전거 및 유모차 거치대 및 벤치 등의 휴식공간을 출입구 주변에 제공한다.

· 자연경관, 조경, 식물 등을 이용하여 출입구 주변에 안정감 있는 치유공간을 형성한다.

· 출입구 주변에 좌석(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형태)과 식물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아동이 낮 시간에 외부에서 활동할 때에 비나 눈,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출입구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문 전후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배려하여 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휠체어, 우산, 지팡이 등의 보관 및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유모차/자전거 보관소

· 주출입구에 접하여 외부에 유모차/자전거 보관소를 확보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유모차/자전거 보관소 벽면이나 기둥은 주변과 다른 색으로 마감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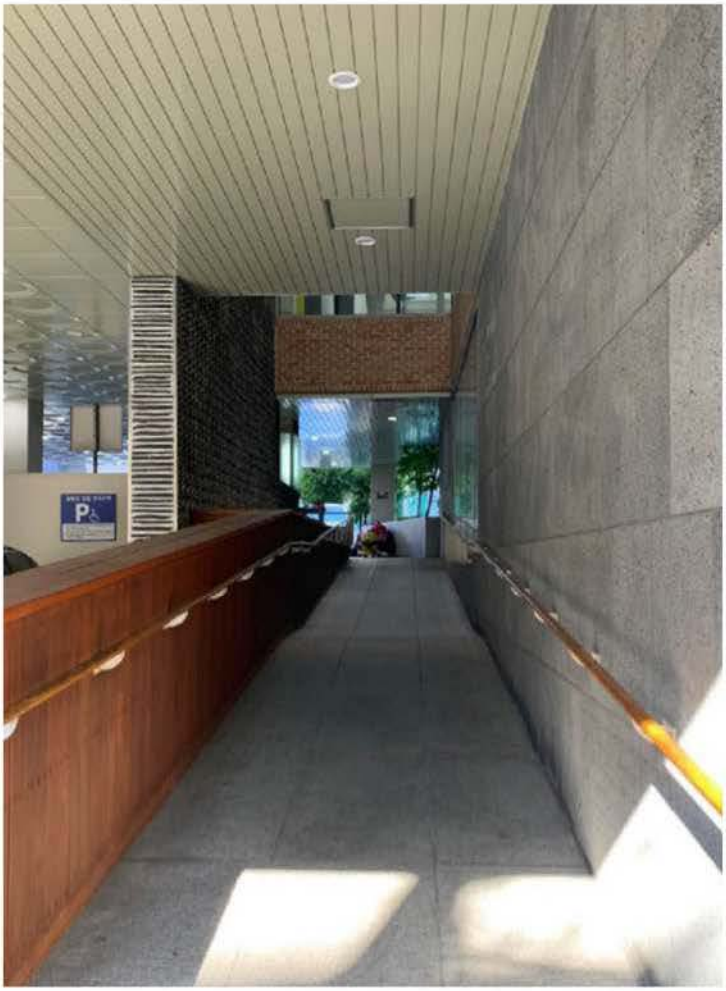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바닥을 평탄하게 마감한 진입로

기본 원칙

·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우며 접근 가능한 진입로를 계획한다.
·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도와 명확하게 분리된 보행로를 확보한다.
· 충분한 유효폭과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보행에 장애가 없도록 구조와 마감을 계획하고, 주출입구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일반

· 대지입구와 건물입구 사이, 주차구역과 건물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한다.

· 대문과 건물의 주출입구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명확한 동선 안내와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보행로를 계획한다.

· 경사로나 계단으로 이루어진 보행로는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한다.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단차와 기울기가 없는 폭 넓은 보행전용구간을 확보한다.

·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로는 명확히 분리한다.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 볼라드를 설치하는 대신, 의자, 식물 등의 가로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동선을 계획한다.

· 진입로 주변에 좌석을 배치하여 이용자가 건물 출입시 휴식을 취하거나 건물 출입구의 방향을 안내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 벤치는 100-125m 간격으로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형태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 진입 보행로는 휠체어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최소 유효폭을 1800mm 이상 확보한다. 아동과 유모차 등이 여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2400mm의 폭을 제공한다.

· 연석 모서리와 보행로에 색채 대비를 적용할 경우, 이용자가 보행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경사로

·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1/20 이하로 조성하고 횡경사는 만들지 않는다.

· 출입구까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바닥면을 마감하고, 경사를 최소화한다. 경사가 1:60-1:25 사이일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경사가 1:25일 경우에는 19m마다, 경사가 1:33일 경우에는 25m 간격마다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바닥 마감

· 바닥은 평평하게 마감하고, 충분히 여유로운 폭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바닥면은 미끄럼방지 기능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하고, 눈부심을 유발하는 재료나 강한 패턴 혹은 색채대비가 적용된 마감재는 선택하지 않는다.

4 외부계단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과 명확한 공간인지를 위해 시각적 대비를 강조한 외부계단

기본 원칙

· 계단은 시작지점과 도착지점에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미끄럼방지 및 배수 조건을 고려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단코, 시작지점과 도착지점, 중간 전이공간 등에 시각적 대비를 적용하여 명시성을 높인다.

일반

· 계단 치수는 모든 칸이 깊이와 높이가 일정해야 한다.

· 계단의 디딤판과 도착지점의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적용하고, 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 모든 계단은 미끄럼방지 마감을 모서리에 하고, 띠를 두를 경우 시각적으로 대비가 잘 이루어지는 색상과 소재를 적용한다.

· 계단의 도착지점은 계단폭과 동일한 길이를 제공하고, 문을 열고 닫을 때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시각장애, 저시력인을 고려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촉감으로 알 수 있는 표면 마감재를 적용한다. (예-코듀로이 요철)

· 계단 양 측면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추운 겨울에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손잡이는 차가운 메탈 소재보다는 목재나 플라스틱 코팅된 소재를 적용한다.

· 계단에는 조명을 고르게 비추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명을 사용할 시에는 빛반사, 강한 광원의 사용, 강한 그림자 형성 등이 나타나지 않게 계획한다. (권장조도 150lux)

5 경사로

기본 원칙

· 경사로는 완만한 기울기와 매끄러운 바닥 마감 등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은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시각적 대비를 적용한다.

일반

· 경사로 표면은 물이 잘 빠지도록 표면을 마감한다.

· 경사로는 가급적 휘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계획한다.

· 경사로 양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면과 가시적으로 대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눈에 잘 띄게 디자인한다.

· 추운 겨울에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손잡이는 차가운 메탈 소재보다는 목재나 플라스틱 코팅된 소재를 적용한다.

· 바닥 마감은 비에 젖거나 건조한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적용한다.

· 저시력인을 고려해 경사로 및 경사가 끝나는 도착지점까지 가시적으로 대비를 이루어 눈에 잘 띄도록 한다.

· 경사로 끝면이 바닥면과 높이가 다를 경우 경계석이나 모서리 보호 구조물을 설치하여 낙상을 예방한다.

· 경사로에는 조명을 고르게 비추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명을 사용할 시에는 빛반사, 강한 광원의 사용, 강한 그림자 형성 등이 나타나지 않게 계획한다. (권장조도 150lux)

6 가로시설물

기본 원칙

· 가로시설물은 이용자의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계획한다.

· 벤치, 기둥 등의 시설물은 배경과 대비가 되는 색채나 소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일반

· 가로등, 벤치, 동상, 우체통, 쓰레기통, 공중전화, 길안내표지판, 식수대 등은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행동선에서 벗어난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

· 보행동선 상에 가로시설물을 배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시설물들을 일렬로 줄을 맞추어 배치하여 보행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 벤치, 기둥 등의 시설물은 배경과 대비가 되는 색채나 소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예-회색 사용 피할 것)

· 볼라드는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비가 강한 색상이나 조명 등으로 눈에 확연하게 띌 수 있도록 한다.

· 볼라드끼리는 줄이나 체인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 벤치는 보행로를 따라서 일정 구간마다 제공하고, 외부계단이나 램프와 같이 단차가 변화하는 곳에도 설치한다.

· 벤치가 설치된 바닥면은 주변과 단차 없이 평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벤치나 의자 주변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벤치나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 쉬우며 허리나 팔을 지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등받이와 팔걸이가 달린 형태를 제공한다.

· 벤치나 의자를 여러 개 나란히 배치할 시에는 시각장애 또는 저시력인의 시각적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받이나 팔걸이 등의 유무 및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제공한다.

풍신한 좌석을 벽면과 일체형으로 계획하여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색채대비로 공간인지를 강조한 로비

4

내부진입 공간

1. 출입구 82
2. 로비 84

1 출입구

기본 원칙

· 모든 출입구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바닥 마감, 유효폭 등을 신중하게 계획한다.

· 주차장과 직접적으로 출입구가 연결되도록 하고, 야간에도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로비는 모든 동선이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방향과 위치를 안내하는 사인을 적절한 곳에 설치한다.

일반

· 모든 출입구는 장애여부, 신체건강 등의 상태를 막론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기존의 출입구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을 보강하거나 별도의 출입구를 계획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인을 고려하여 출입구 앞 바닥면은 주변과 다른 재질의 마감소재를 사용한다.

· 작은 분수, 바스락 소리가 나는 잎사귀를 지닌 식물 등의 청각적 요소와 향이 나는 식물 등의 후각적 요소를 입구 주변에 활용하여 출입구의 인지에 도움을 준다.

· 입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여 입구의 위치를 강조하고 야간에도 주목성을 높이도록 한다.

· 직원 전용 출입구, 화물 또는 서비스 출입구 등 모든 출입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지하주차장 또는 주차건물이 별도로 제공될 경우, 주차장 엘리베이터와 출입구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출입구의 문은 건물 내외부 바닥면과 단차 없이 수평이 되도록 문턱을 제거한다.

· 출입구 주변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빗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 바닥에 강한 그림자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바닥면에 미끄럼과 눈부심을 방지하는 재료를 선택하고, 강한 패턴이나 과도한 색채대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간 계획

· 모든 출입문 주변에는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사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제공한다.

· 계단,램프, 긴 통로 끝에 출입구가 위치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안내견, 보행보조기 등이 대기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구의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경우 출입구 주변에 대기 및 이동하는 사람과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구 문 입구에 최소 600mm의 폭으로 여유있는 대기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쾌적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출입문의 주변에는 1600mm의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장애가 없도록 한다.

로비는 모든 동선이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교류공간이 되도록 카페설치

2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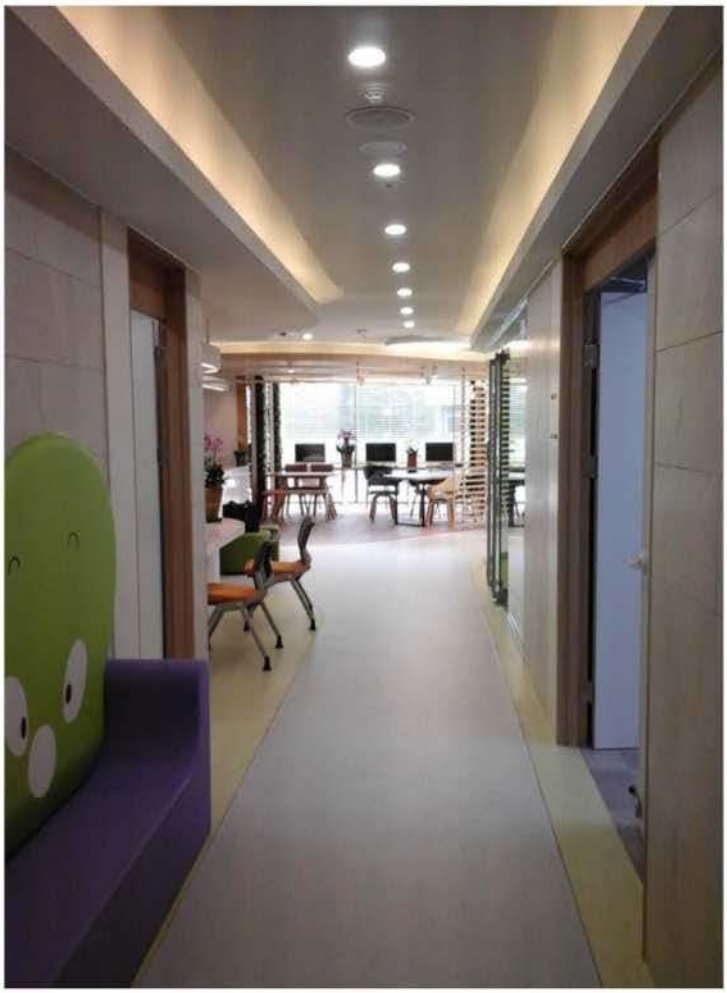

이용자가 담소를 나누고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기본 원칙

· 여유있는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모든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
· 각 실로의 명확한 동선이 안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인과 색채계획을 고려한다.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일반

· 편안한 좌석과 부드러운 조명을 제공하여 집과 같은 안락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가방이나 음료수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진입공간에 카페, 갤러리, 가게, 로비와 같은 공간을 적절히 계획한다.

· 모든 동선은 명확하게 인지 가능해야 하고, 장애물이 없으며 출구와 입구로 가는 방향과 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로비는 가능한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문을 열고 닫을 때 휠체어를 포함한 사용자가 보행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입구로비는 사용자의 이동과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창고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입구로비는 건물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전이공간으로 한낮 또는 야간에 내외부의 급격한 조도 차이로 인해 사용자가 느끼는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명을 계획한다.

· 로비에 유리 스크린이나 문을 설치할 경우, 건물 내외부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나 빛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인

· 안내데스크는 멀리서도 눈에 띄기 쉬운 글자크기와 대비로 한다.

· 다국어를 병기한다.

· 안내데스크의 심볼 사인은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어야 한다.

재료와 마감

· 바닥 마감은 단단하고 평평하며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적용한다.

· 바닥에 물이 젖는 것을 대비하여 물에 젖었을 때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선정한다.

· 바닥 마감이 통기성이 없는 소재인 경우, 미끄럼 방지 및 물흡수를 위해 매트를 설치한다.

· 바닥에 까는 매트는 바닥면과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고, 신발 바닥이나 휠체어 바퀴에서 빗물을 제거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 매트는 압축성소재 또는 털이 긴 소재를 피하고 표면이 평평하고 단단한 소재를 선택한다.

대기 공간

· 차량 대기, 가방 또는 옷 잠시 보관, 오래 서 있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안내데스크가 보이는 곳 주변에 편안한 대기 좌석 공간을 확보한다.

· 대기 좌석은 주변과 대비를 이루는 색채를 선정한다.

· 좌석은 앞 모서리가 둥글고, 단단하게 방석 쿠션(패드)이 부착된 것으로 선택한다.

· 의자를 잡고 앉거나 일어설 때 편리하도록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형태로 대기 좌석을 제공한다.

· 여유공간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팔걸이가 없는 좌석을 제공하기도 한다.

· 대기 좌석은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시각장애인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바퀴 부착된 형태는 사용 금지)

출입구에서 바로 헤메이지 않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 목발, 우산, 짐 등을 잠시 둘 수 있는 거치대를 마련한다.
- 사무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 사용자의 수준이나 인지능력에 관계없이 알기 쉬운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 안내데스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 출입구에서 안내데스크로 가는 길은 돌아서 가지 않도록 계획하고, 동선상에 장애물이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 안내데스크는 서 있는 경우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경우 모두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다양하게 계획한다.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부공간은 비워진 구조로 계획한다.
- 안내데스크는 청각 보조기를 착용한 사람들을 위해 유도 루프 시스템(induction loop system)을 갖추고 기기의 위치와 안내를 사인으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 자연광과 인공조명은 안내데스크 뒤에 위치할 경우 그림자를 형성하여 입술읽기(lip reading)등 시각적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배치한다.
- 안내데스크에 보안 등의 이유로 유리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 반사 등으로 인해 시각적 의사소통이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데스크 주변(대기공간 포함)은 블라인드, 조광 스위치, 컴퓨터 제어 시스템 등으로 빛(자연채광, 인공조명)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 출입구 문에서부터 안내데스크까지의 동선은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색채 대비를 적용한다.
- 안내데스크 주변에 화장실이 인접하도록 배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한다.
- 리프트, 계단, 화장실, 전화 등 건물 내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표지판을 안내데스크 주변에 부착한다.

안내데스크와 카페 ,화장실등 명료하게 동선이 정리된 로비

문 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된 안전손잡이와 친숙한 이미지로 이용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복도

5
내부 이동 공간

1. 복도 90
2. 엘리베이터 94
3. 계단 99
4. 경사로 102

1 복도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 복도

기본 원칙

- 눈에 띄는 선명한 색채, 랜드마크, 시각적 포인트, 식물이나 조형물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인지하고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가 잠시 쉬어가거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대기 및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바닥 마감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명확한 동선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반

·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구간 내에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 눈에 띄는 선명한 색채, 랜드마크, 시각적 포인트, 식물이나 조형물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인지하고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실 주변에 전동스쿠터, 보행보조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 복도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램프 끝, 복도 끝, 복도 교차지점에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이 회전하여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 확보한다.

· 소화기, 정수기, 화분, 장식물 등은 통행을 방해하고 유효폭을 점유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현재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다.

· 복도에는 랜드마크가 되는 시각정보물 및 장식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 픽처 레일을 설치하거나 벽에 장식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매립 설치한다.

· 색, 가구, 마감재를 층별 혹은 영역별로 다르게 계획한다.

· 전체조명을 사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며, 다른 공간과의 밝기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야간 이동을 위해 눈부심이 적은 상시 조명등을 설치하고, 벽면의 게시물을 위한 스포트라이트 및 벽부등을 설치한다.

· 복도의 동선은 최소로 계획하고, 출입구 없이 막힌 통로가 없도록 한다.

· 창문은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한다.

· 바닥 마감재의 색채 대비, 재질 변경, 가구 배치 등으로 동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안내한다.

· 라디에이터, 소화기 등은 복도 폭을 좁게 만들거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시부터 위치를 고려하고, 가능한 벽 안쪽으로 매립한다.

· 식물이나 좌석 배치시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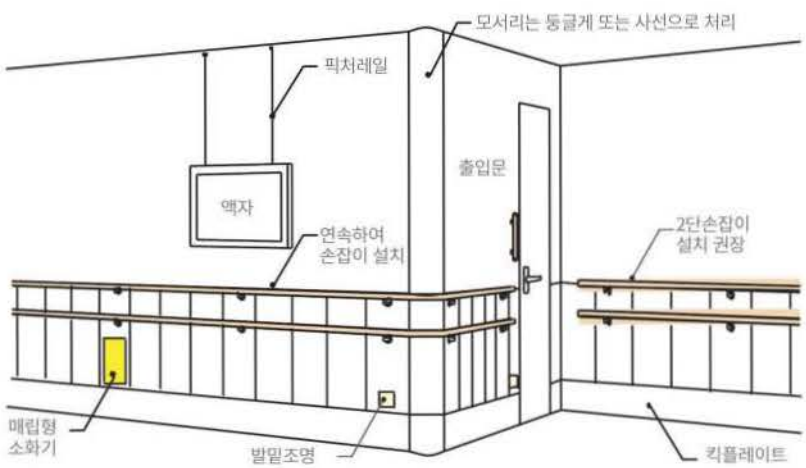

재료와 마감

· 복도는 동일한 층 내에서는 단차가 없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한다.

·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탄력성이 높은 바닥재는 넘어짐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여러 종류의 바닥재를 사용할 경우, 연결부위의 시공에 유의한다.

· 복도 벽은 휠체어 이동시 충돌에 대비하여 킥 플레이트((kick plates)를 설치한다.

· 복도 벽의 모서리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처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모서리 보호패드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좌석 공간

· 복도가 긴 경우, 적당한 간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좌석 배치한다.

· 복도는 어린이 보호자, 가족이 대기하는 공간의 기능도 겸하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좌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 복도 한켠에 작은 좌석공간(창가 좌석 포함)을 계획하여 1인, 1:1, 소수의 그룹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실 입구에 신발장을 독립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대기용 좌석 하단부에 신발장 또는 수납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각적 대비

· 아동의 좌석과 바닥면에 적절한 색채대비를 적용하여 가시성을 높인다.

· 바닥면은 강한 패턴이나 과도한 색채 변화를 피하고, 가능한 한 단색의 무광택으로 마감하여 눈부심과 빛반사를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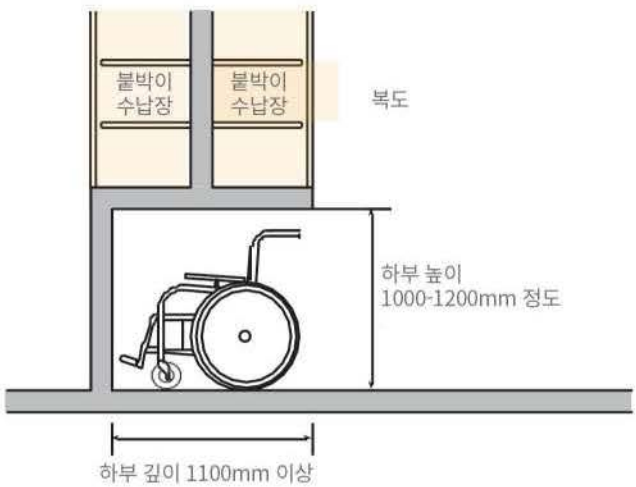

안전손잡이

· 안전손잡이는 낙상방지를 위해 손잡이를 따라 걷거나, 손잡이를 손으로 눌러 지지하면서 보행하는 등의 사용방법이 있다. 보행이 불편한 사람에게 손잡이는 보행 보조기이며 손잡이의 연속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창문이나 소방설비의 소화전 등은 손잡이의 높이를 피하여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복도 벽면 전체에 양쪽으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되, 설치 후 복도 폭이 좁아지지 않도록 충분히 복도폭을 확보한다.

·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끊기는 곳을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연속성을 확보하여 보행보조의 기능이 되도록 한다.

· 안전손잡이는 튼튼하게 부착하고 잡기 편해야 하며, 주변 벽과 대비를 이루는 색을 적용한다.

· 안전손잡이 설치 시 시작과 끝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 라디에이터와 안전손잡이가 너무 가까이 위치할 경우 손잡이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 장애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간(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의 복도는 아동의 스케일에 맞추어 안전손잡이의 높이를 조정한다.

· 서서 이용하거나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이용하는 장애인, 아동을 위해 복도 양 측면에 2단 손잡이를 설치한다. 높은 손잡이는 바닥으로부터 약 850mm, 낮은 손잡이는 바닥으로부터 약 650m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한다.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800-900mm에 설치한다.

· 안전손잡이는 바닥면에서 900-1000mm 높이로 설치하고, 계단도착 지점에는 그보다 높은 1100mm의 높이로 설치한다.

· 손잡이의 형태는 쥐기 쉽도록 직경 32-38mm 정도의 원형 단면으로 하고, 손잡이와 벽은 50mm의 이격을 두며, 120kg 이상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설치한다.

· 안전손잡이의 단면이 둥글 경우에는 40-50mm의 지름을 지닌 원형이 적당하고, 납작한 형태일 경우에는 50x38mm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 아동을 위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단면 크기는 25-38mm 정도가 적당하다.

· 안전손잡이의 끝부분은 아래쪽으로 150mm 꺾어 내리거나 벽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끝이 나게 계획한다.

· 안전손잡이는 주변 배경과 명확하게 시각적 대비를 강조하고, 겨울철 차가워지는 소재에서 벗어나 목재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한다.

복도 창문을 따라서 설치된 안전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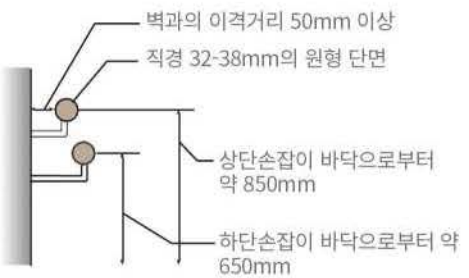

2 엘리베이터

층별 안내를 지정색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안내한 엘리베이터 입구 사인

기본 원칙

· 엘리베이터 전면부와 문, 내부공간에서 휠체어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유공간을 계획한다.

· 휠체어 이용자가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버튼의 위치를 고려하고, 음성안내, 안전손잡이, 점자, 점멸등을 제공한다.

· 안전손잡이, 거울, 사인, 의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설비를 적용한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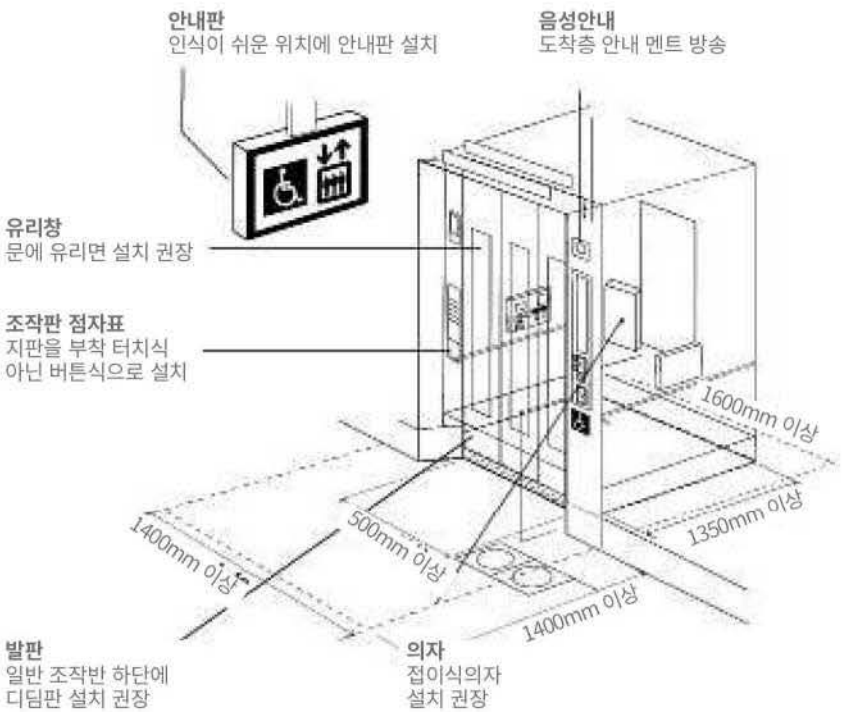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스툴

전층 안내와 각층 지정색 버튼

열고 닫힘을 알 수 있는 문 조명

일반

·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하여도 여유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는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계획한다.

· 엘리베이터는 대피용 엘리베이터 기준에 맞게 설계하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비상시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피 방법과 경로를 별도로 확보한다.

· 비상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내화성 구조(fire-resisting enclosure)와 독립적인 전기 공급 시스템을 갖춘다.

· 엘리베이터는 계단과 인접 배치하여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유리벽으로 된 엘리베이터를 제공할 시, 일반 폐쇄형 엘리베이터를 함께 인접 배치하여 제공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조명은 빛반사와 그림자를 고려하여 고르게 퍼지도록 계획한다.

· 조명은 간접조명과 천장 패널 방식을 제공한다.

· 엘리베이터 컨트롤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고려한다.

· 안전손잡이는 내부에 컨트롤 패널을 피해서 설치한다.

· 안전손잡이는 바닥면에서 900mm 높이, 벽면에서 35-45m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필요시 의자를 배치하여 장시간 신체지지가 힘든 노인, 장애인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면적과 유효폭

· 엘리베이터 내부 공간은 최소 1800x1800mm 의 면적을 확보한다.

· 엘리베이터 문은 950mm 이상 폭이 열리도록 계획한다.

· 엘리베이터 문 앞 공간은 1800x1800mm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대기 및 활동이 원활하게 한다.

· 데이케어센터가 복지관 내에 위치할 경우, 엘리베이터는 침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있는 폭으로 선택한다.

재료와 마감

· 바닥 마감은 미끄럼방지 재료를 선택하고, 강한 패턴이나 과도한 색채대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엘리베이터 문 주변 바닥에는 특히 주의하여 색채와 마감을 계획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은 광택이 없고 단단하며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은 각 층 바닥면과 유사한 마감/마찰 소재를 적용하여 이용자가 단차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 벽면은 반사와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광택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과도하게 큰 거울이나 고광택 마감은 적용하지 않는다.

· 뒷벽면에 거울을 부착할 경우, 바닥면에서 900mm 높이에서부터 천장까지 시공하여 사용자가 거울면을 복도로 인지하지 않도록 한다.

색채와 패턴

· 바닥면과 엘리베이터문은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색채를 계획한다.

· 어두운 색상과 톤은 이용자가 바닥이 비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닥과 천장은 시각적 대비를 주어 내부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인

· 건물 입구에 엘리베이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표지판 제공한다.

·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층별 인지가 쉽도록 계획한다.

· 바닥에 해당층을 나타내는 숫자를 크게 표시하거나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보이는 벽면이 있다면 벽면에 숫자를 크게 표시한다.

· 층별 주조색을 바닥이나 벽의 마감재, 사인 등에 적용하여 인지성을 높일 수 있다.

· 층수를 인지하기 쉽도록 승강장에 충분한 크기의 숫자를 표시한다.

· 층수 안내 표지판은 가시적이고 촉각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 층수 안내 숫자는 벽면과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계획한다.

· 촉각 문구는 표면에서 1.5mm 이상 튀어나오고, 30-40mm 높이로 제작하며, 버튼간의 간격은 10mm 로 한다.

· 층수 안내 표지판은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과 엘리베이터 문 맞은편 두 군데에 동시에 제공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층수 확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 모든 층 안내는 시각 및 청각으로 전달되게 하고, 층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와 확인이 가능케 한다.

· 청각 시그널은 35-65 dB(A) 사이로 제공하며, 위/아래 방향을 안내시 벨 횟수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 비상시 알람 버튼은 노란색에 벨 모양의 픽토그램을 넣어 제작하고,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청각 시그널을 제공한다.

· 유리와 거울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시각적 마크를 부착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 (위치 바닥면에서 850-1000mm/1400-1600mm)

· 유리와 거울의 마크는 거울에 비치는 뒷배경과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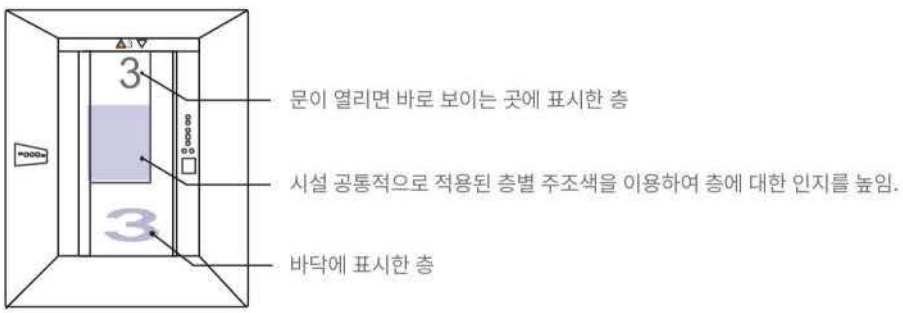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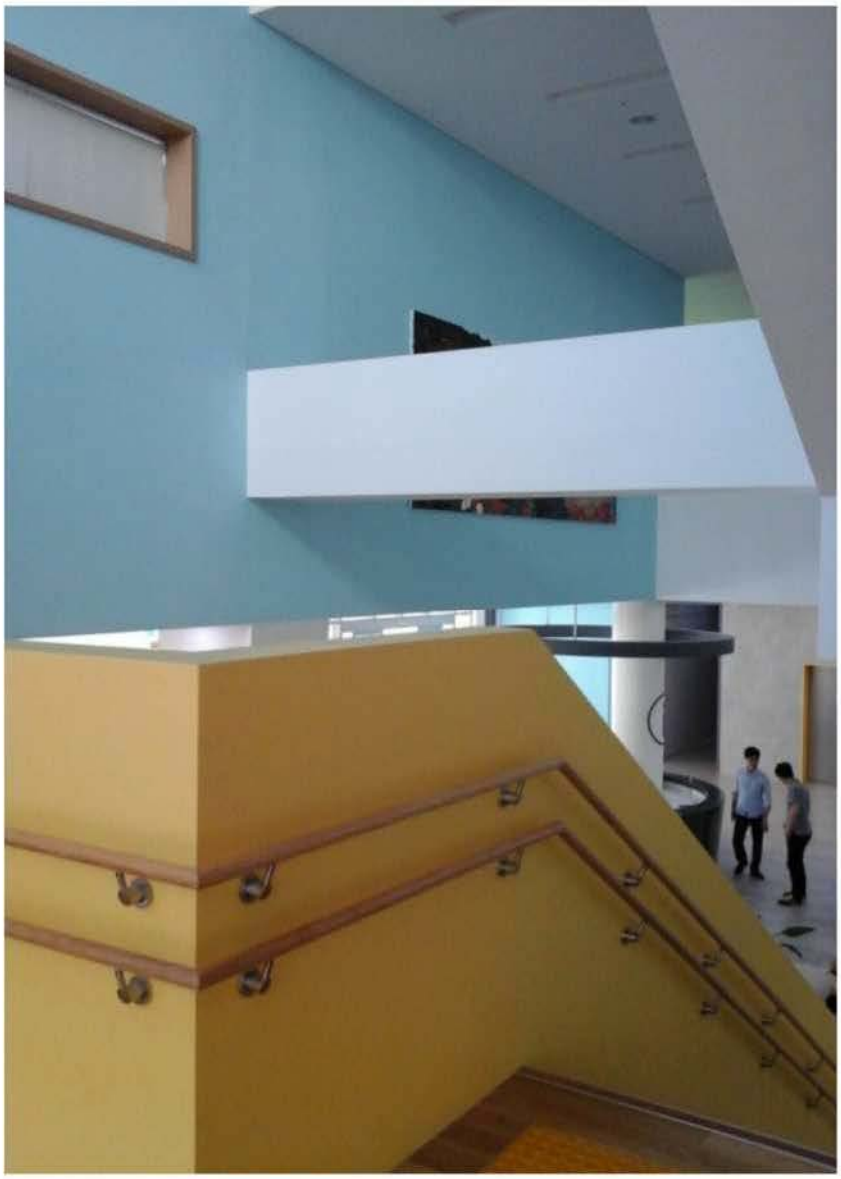

레이어가 다른 층별로 구분되는 색채를 적용하고, 높은 천장고와 밝은 색채로 개방감을 강조한 계단

3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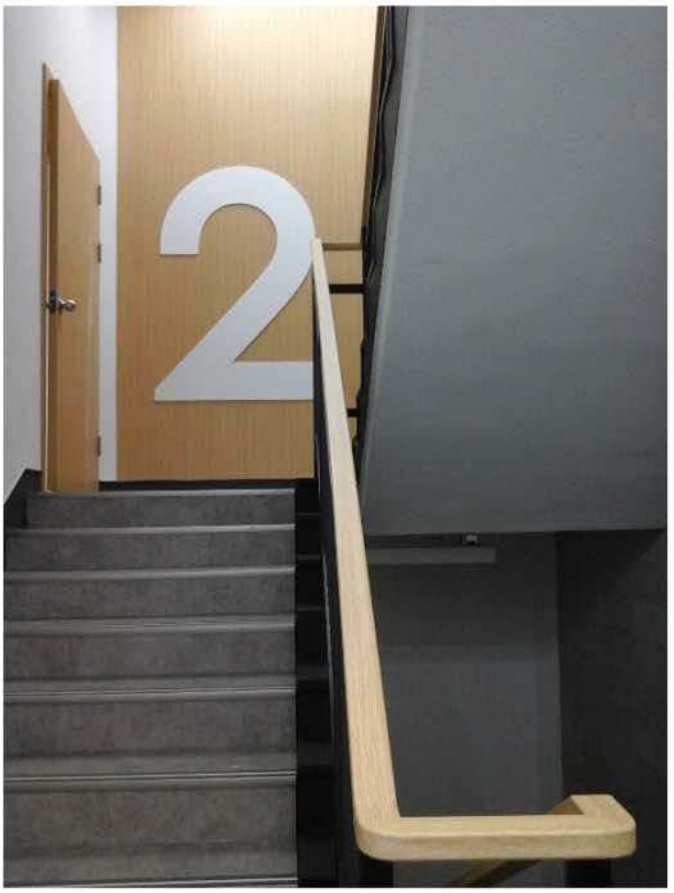

해당층의 숫자를 크게 부착하여 공간 인지에 도움을 주는 계단

기본 원칙

- 모든 계단 모서리는 시각적으로 인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계단의 아래와 위쪽 도착지점은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계단 아래와 위쪽 도착지점은 재질이나 마감, 점자블록 등의 촉각을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일반

· 계단의 아래와 위쪽 도착지점은 계단폭에 상응하는 길이로 공간을 확보한다.

· 계단 아래쪽에는 층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누구나 오르내리기 쉽고 안전한 계단을 설치한다.

·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하며, 원형 및 수평 참 확보가 되지 않는 형태는 피한다.

· 계단코는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출이 없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계단코와 디딤판의 색상을 달리하도록 한다. 또한, 시작단과 끝단의 계단코 색상을 차별화하면 계단의 시작과 끝을 인지하기 쉽다.

· 계단참에는 층을 안내하는 사인을 설치하여 현재 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한 단으로 구성된 계단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

· 계단의 유효폭은 1500-2400mm로 확보하여 여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최소폭은 1200mm를 확보한다.

· 계단은 1500mm의 높이마다 시작점과 끝단에 면하여 층계참을 설치한다. 단, 계단이 출입구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1800-2400mm의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한다.

·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문이 위치할 경우, 문은 실 안쪽으로 열리도록 방향을 계획한다.

· 계단은 전체 높이가 1800mm 또는 12계단을 넘지 않게 설계한다.

· 주출입구 계단은 출입구 방향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의 선호도와 편의를 고려하여 계단 옆에 경사로를 별도로 제공한다.

· 계단의 치수는 모두 일정하게 계획하고, 첫단과 끝단에는 미끄럼 방지 및 안전을 고려하여 요철이 있는 패턴(예-코듀로이 패턴)을 적용한다.

조명

· 야간에도 발밑이 잘 보이도록 디딤판을 비추는 풋라이트(foot light)를 계단의 시작과 끝에 설치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 직접 광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눈부심 현상이 생기지 않고 방향성이 강하지 않은 조명을 설치한다.

· 계단이나 보행자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위치에 조명을 설치하며, 계단 디딤판과 벽면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게 한다.

안전손잡이

- 계단 폭이 넓을 경우, 가운데에 별도의 안전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 계단의 양측에는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한다. 챌면 높이는 18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80mm 이상으로 한다.
- 계단 손잡이는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을 300mm 이상 수평으로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손잡이는 주변 배경과 시각적 대비가 뚜렷하게 색채를 계획한다.
- 안전손잡이는 계단이나 경사로의 양 측면에 설치하고, 아동의 키높이를 고려하여 바닥면에서 600-750mm 높이에 추가 설치한다.
- 계단 폭이 2000mm를 넘길 경우, 가운데에 추가적인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영역을 분리한다.

시각적 대비

- 계단의 챌면과 계단면에 강한 색채대비를 주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계단의 첫단과 끝단에는 다른 색으로 계단코를 적용하여 이용자가 계단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한다.
- 계단코는 50-70mm의 폭으로 제작하고, 계단면과 강한 시각적 대비를 이루는 색채를 사용하여 주목성을 높인다.
- 계단과 벽면은 직절한 색채대비를 통해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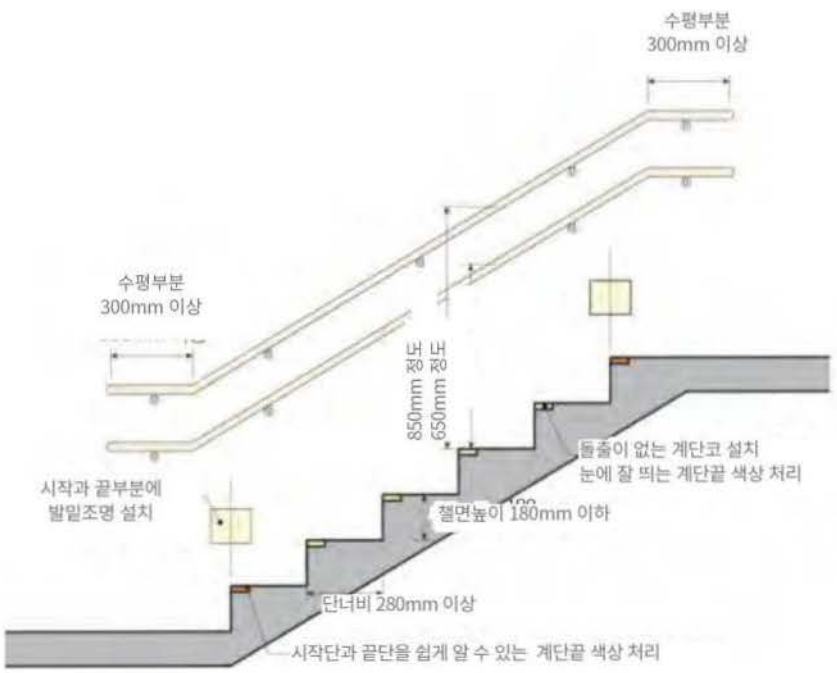

4 경사로

기본 원칙

· 계단과 함께 경사로를 계획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완만한 기울기와 미끄럼방지 소재의 적용으로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보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명확한 시각적 대비를 통해 공간 인지에 도움을 준다.

일반

· 경사로를 설치하여 수직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비상시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 길이 10m 이내마다 중간참을 설치하여 내려올 때는 가속되지 않고, 오를 때는 잠시 쉴 수 있도록 한다.

· 휠체어 바퀴나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추락 방지턱을 설치한다.

· 경사로는 계단과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에 따라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단차가 300mm 이하일 경우 경사로만 제공 가능)

· 내부 경사로는 1/20 기울기 이하로 설계하되, 시작과 끝지점의 높이 차이는 450mm 이하여야 하며, 램프의 최대 길이는 9000mm 이하로 설계한다.

· 경사로 폭은 1500-1800mm 이며, 양방향 보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1800mm가 확보되어야 한다.

· 경사로의 도착지점은 2440x2440mm의 면적을 확보하여 휠체어 등의 회전과 방향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경사로의 중간 지점 층계참(landing)은 2000x2000mm의 길이와 폭을 확보한다.

· 경사로는 기울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설계한다.

-경사로 길이 10-15m일 경우-기울기 1:25
-경사로 길이 5-10m일 경우-기울기 1:20
-경사로 길이 2-5m일 경우-기울기 1:15
-경사로 길이 2m 이하일 경우-기울기 1:12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에는 반드시 2000-2400mm 길이의 층계참을 확보한다.

· 조도는 150lux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 경사로의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건물내에 배치한다.

재료와 마감

· 경사로에는 안전과 보행에 혼란과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적인 마감소재나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 바닥의 표면마감은 미끄럼방지 소재를 적용한다.

시각적 대비

· 경사로의 경사면과 도착지점은 시각적으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명확하게 구분한다.

· 경사로는 안전을 위해 연석 또는 모서리 보호구조를 계획하되, 바닥면에서 연석은 100mm 높이를 유지하고 경사로 바닥면과 시각적 대비를 이루게 한다.

안전손잡이

· 안전손잡이는 경사로의 양 측면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을 준다.

· 스틸 소재의 안전손잡이는 겨울철에 차가운 온도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목재 등의 소재로 제작한다.

· 안전손잡이는 바닥면에서 900-1000mm, 600-750mm의 높이에 각각 설치한다.

· 안전손잡이를 2단으로 계획할 시, 상단은 바닥면에서 900-1000mm, 하단은 바닥면에서 600-750mm 높이 지점에 설치한다.

· 안전손잡이는 벽면에서 50-75mm 떨어진 곳에 부착하고, 벽면 마감이 거친 소재로 되어 있을 경우 60mm 이상은 떨어져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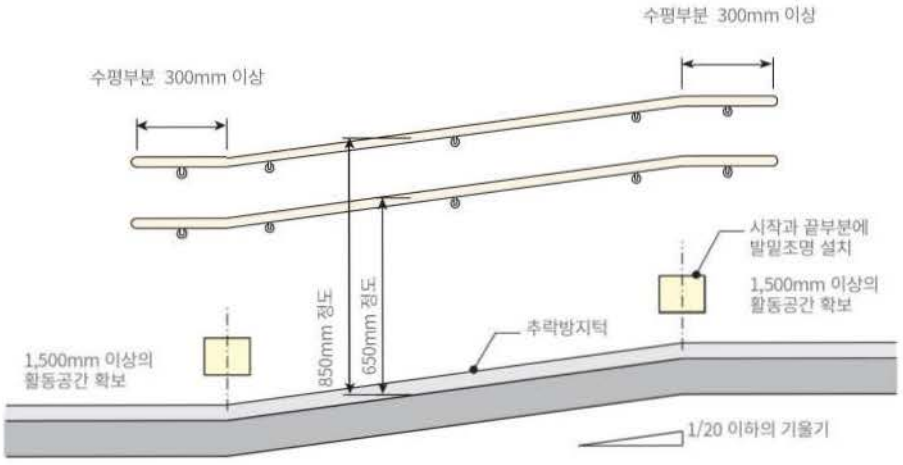

유리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하여 밝고 쾌적한 식당

6
내부 기능별 공간

1. 식당 및 주방 106
2. 공용공간 108
3. 프로그램실 111
4. 관리 및 서비스 공간 119
5. 화장실 및 욕실 121

1 식당 및 주방

다목적 기능으로 계획된 주방

기본 원칙

· 식당은 소규모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휠체어가 식탁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활동공간을 배려한다.

· 국부조명, 벽부등, 스포트라이트 등 다양한 조명을 활용하여 쾌적한 공간을 연출한다.

일반

· 식당은 식사 공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식당 출입문의 폭은 여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가급적 1200mm 이상으로 설치하되, 전동 휠체어의 교행을 고려하여 1800mm를 확보한다.

· 4-6명이 둘러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소규모 영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휠체어, 지팡이 사용자를 고려하여 식탁과 의자를 선택한다.

·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테이블 사이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다.

· 식당 주변에는 식사를 기다리거나 식사 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식당 출입문 주변과 식수대 주변에 식사전후 위생관리가 가능한 세면대와 거울을 설치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한 바닥마감재를 선택한다.

· 음식이 맛있어 보이도록 연색성을 배려한 전반조명을 선택한다.

· 식당에 할로겐 매립등, 벽부등, 장식장이나 벽 그림에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여 시설적인 느낌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주방

· 검수실, 조리실, 영양사실, 식품고, 휴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한다.

· 위생관리를 위해 다른 공간과 명확하게 구획하고, 식자재 조달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용이한 별도의 동선을 확보한다.

· 서서 일을 하는 급식관련 종사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설치하며,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추도록 한다.

· 조리과정에서 냄새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갖추고, 식자재를 벌레로부터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방충시설을 갖춘다.

· 메뉴를 기본으로 한 기구 선정, 조리작업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식당이 인접하지 않은 경우, 식사 운반용 카트를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위생 관리를 위해 상하층을 연결하는 배식 전용 덤웨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품고, 냉장고, 냉동고는 다량의 물품저장의 경우를 고려하여 저장량을 선택한다.

2 공용공간

유리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개방감이 강조된 공용공간

기본 원칙

· 정원, 카페, 식당 등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 소규모 단위의 중심부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용공간으로 구성한다.
· 프로그램실 주변은 가구와 소파를 제공하여 보호자 대기실 및 휴게실로 계획한다.

일반

· 정원, 카페, 식당 등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 갤러리, 로비, 커뮤니티 카페 등을 지역에 개방한다.

· 소규모 단위의 중심부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용공간으로 구성한다.

· 유사 프로그램별로 공용공간을 두어 전시, 정보교류, 만남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보호자 대기실 및 휴게실로 계획한다.

· 중심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용공간을 구성한다.

· 휴식, 교류, 놀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모두 이용가능한 공용공간을 시설의 중심에 배치한다.

·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모든 공간에서 접근 가능한 주된 동선에 인접해야 하며, 실외 또는 실내 다른 공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공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이용자 동선 외에 안전하게 머무르거나 활동을 위한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유모차를 이용하는 가족, 보행이 불편한 노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외국인 등 프로그램별 이용자특성을 고려하여 각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동선을 계획한다.

· 이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 날씨와 기온에 상관없이 실내와 실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망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주된 활동공간이나 휴게나 담화를 위한 공용공간을 배치하도록 한다.

· 공용공간 전면에는 테라스나 데크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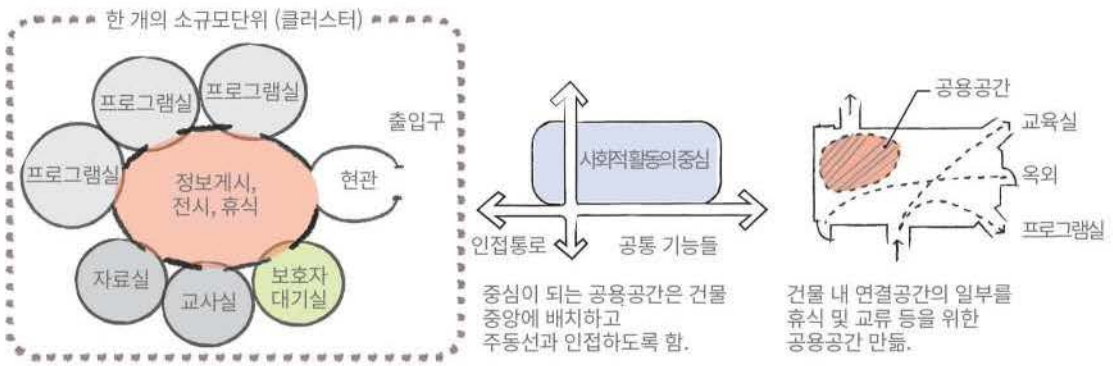

휴게공간

· 프로그램실 주변에 이용자와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곳곳에 마련한다.

· 혼자 또는 여러 명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 및 기구들을 비치한다.

· 냉·난방에 유의하고, 식수대 및 음료자판기를 인접하게 둔다.

·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실과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옥외정원 등을 만든다.

·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차 및 장애물을 제거한다.

· 흥미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꽃, 작물, 정자, 그네 등을 계획한다.

· 화단이나 작물재배공간 등은 휠체어 사용자도 가까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 타인의 활동을 볼 수 있으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식재를 이용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공간을 계획한다.

· 비나 눈을 피해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파라솔이나 파고라, 정자 등을 계획하되, 정원 출입구에서 비를 맞지 않고 이동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정원의 나무와 작물 등은 실수로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다.

· 물, 바람, 풍경소리 등의 청각 요소, 향기가 있는 식재 등의 후각 요소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원으로 계획한다.

열린 광장/이벤트홀

·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단차가 없이 평평하며,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높낮이 차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쉼터나 공연장소를 확보한다.

· 휴게공간에는 차양을 위한 식재를 계획한다.

· 야간이용자를 위한 조명시설을 갖춘다.

3 프로그램실

관련서류를 충분히 수납 할 수 있도록 레일식으로 계획한 서류보관용 서가

화이트 톤의 마감과 충분한 조도의 확보로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프로그램실

기본 원칙

· 이동 및 접근성의 효율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교류를 유도한다.
·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구조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일반

· 유사 프로그램별 또는 대상 이용자별로 영역을 나누어 배치한다.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이동이나 접근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 운영관리가 용이하고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적도록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 프로그램의 변동 시 공간 재구성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공간을 계획하고 가변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 복도 중심의 대규모 공간구성보다는 유사프로그램을 모아 소규모 단위(클러스터형)로 공간을 구성한다.

· 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을 목록화 하여 연관되는 활동끼리 가까이에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연채광과 환기, 실외공간과의 접근, 실외 조망 유무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 장시간 체류하는 이용자를 위한 공간은 햇빛이 잘 들고 실외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시각, 청각, 후각 측면에서 공간의 접근과 분리를 면밀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주된 활동공간을 배치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실은 방음성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 이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실은 환기에 유의한다.

·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동으로 조명이 점멸하거나 냉난방이 꺼지는 센서 기능을 적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고려한다.

가구와 설비

·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적합한 규모와 설비를 갖춘 공간을 계획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 등을 설치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계획한다.

· 프로그램실 주변에는 보호자 대기 및 휴식을 위한 벤치 등을 설치한다.

·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실에는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깨끗한 바닥을 만든다.

·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여러 명이 동시에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활동공간을 마련한다.

· 우산이나 휠체어 등의 수납공간, 벤치, 손잡이 등을 설치한다.

· 프로그램에 따라 이동이 잦은 경우를 고려하여 가볍고 고정가능한 바퀴가 부착되어 있는 이동·운반이 편리한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한다.

·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개인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을 제공한다.

· 전자기기(빔프로젝터, TV, 컴퓨터, 음향기기 등)의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춘다.

· 향후 공간의 기능/용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조와 설비 등을 유연하게 계획한다.

조명

· 작업공간은 시력보호를 염두에 둔 조명계획을 세워야 하며, 눈에 피로를 주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고 조명 갓은 눈높이보다 낮게 설치한다.

· 작업공간은 천장의 전반조명과 스탠드를 함께 켜서 밝기의 편차를 줄이도록 한다.

· 물리(작업)치료실은 기능회복을 위한 활동, 물리치료, 작업요법 등의 활동을 위해 주간에 주로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주광이 충분히 유입되도록 계획한다.

· 물리(작업)치료실은 클럽활동, 작업치료 등을 위해 밝은 조명계획을 추가한다.

강당

· 대규모의 인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여럿이 동시에 드나들 수 있도록 문 의 유효폭은 최소 1800mm 이상으로 한다.

· 방향이 다른 최소 두 개의 출입문을 계획한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공간은 1석당 폭 900mm, 깊이 1300mm 이상으로 하고, 동반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사용자도 단상에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나 리프트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설 수 있는 낮은 연설대를 마련한다.

· 연극,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능하도록 무대 및 준비공간 등을 마련한다.

· 다양한 활동을 위해 의자 및 테이블 등의 수납공간을 충분히 계획하여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프로그램 및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다.

· 채광조절이 가능한 커튼 및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 벽면과 천장에 흡음재를 사용하여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한다.

· 난청인을 위해 집단 보청장치 등의 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도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와 대피공간을 확보한다.

방음 설비를 갖추고 무대 위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한 강당

미술활동실

·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지울 수 있는 벽을 제공하고, 작품을 부착하거나 전시하기 쉬운 벽으로 계획한다.

· 수채화 등 물을 사용하는 미술활동을 위해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물감 및 연필가루 등의 청소가 용이한 바닥재질을 사용한다.

· 이젤 사용공간, 정물대, 다양한 정물 수납장, 도화지 등의 미술용품 등이 수납가능한 수납장을 계획한다.

· 세면대 및 싱크대를 설치하여 미술활동을 준비하고 청소하기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하부를 비우는 구조로 계획한다.

음악활동실

· 자유로운 음악활동이 가능하도록 방음이 되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 악기 등의 기구들을 적절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체육활동실

· 체조, 무용 등이 가능한 전면유리, 핸드바가 있고 음향시설을 갖춘 체육활동실을 계획한다.

· 바닥난방과 방음에 유의한다.

· 다양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방음이 되는 마감재 사용과 기구들을 적절히 수납할 수 있는 가구가 있는 다목적공간

도서실

- 책상 뿐만 아니라 서가주변, 복도, 창가 등 곳곳에 다양하고 흥미로운 독서공간을 만들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서가 및 도서검색대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한다.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으로 검색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로 유도한다.
- 바닥은 휠체어 등의 바퀴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한다.
- 도서검색, 독서에 적합한 전체조명 및 부분조명을 계획한다.
- 서가 분류 사인물은 휠체어 사용자도 보기 쉬운 높이, 글자체, 크기로 계획한다.
- 검색을 위한 일련번호는 지적능력이 저하된 이용자도 알기 쉽도록 복잡하지 않으며, 보기 쉬운 글자체와 크기, 색으로 계획한다.
- 영유아 및 아동영역은 분리하여 연령에 맞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강좌실/컴퓨터실

- 시청각강의가 가능하도록 스크린, 빔프로젝트 등의 설비를 갖춘다.
- 채광조절이 가능한 커튼 빛 블라인드 등을 설치한다.
- 강단, 칠판, 수강책상 등 영역을 분리하여 조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책상 주변에 각자 가방을 놓거나 우산, 목발 등을 기대거나 걸칠 수 있는 걸이 등을 계획한다.

방과후교실

- 방과후 혼자 혹은 여러 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배치한다.
- 편안한 자세로 휴식할 수 있는 소파 및 평상 등을 배치하여 늦게 귀가하는 아동이 장시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영역을 분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계획

주간보호센터

· 이용자에게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식사 등의 기능적 공간은 가급적 분리한다.

· 거실, 정원 등의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안한 자세로 휴식할 수 있는 소파 및 평상 등을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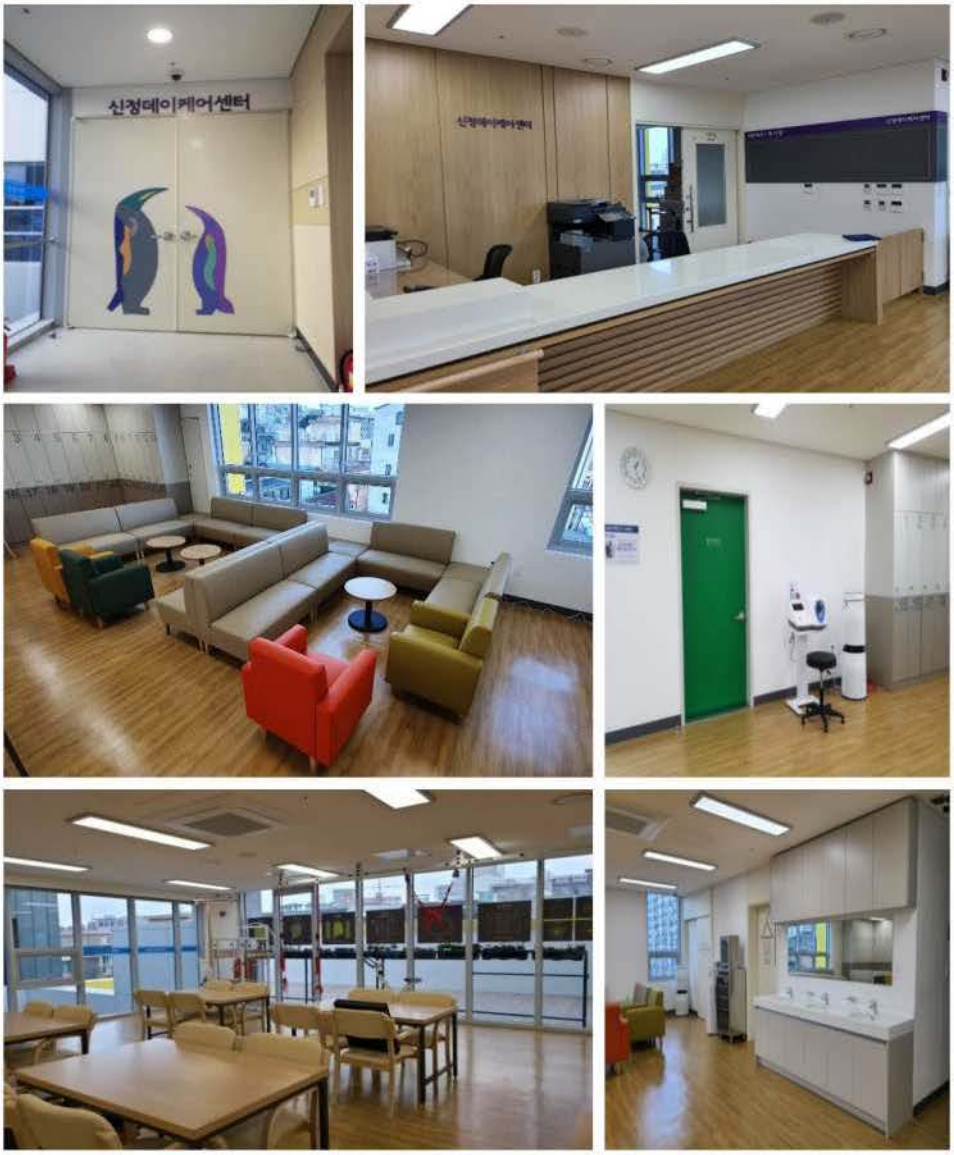

다양한 프로그램 이 가능한 배치를 위해 이동 가능한 가구와
인지강화요소를 적용한 안정적인 공간

심리치료실

· 이용자 1인이 교사 1인과 함께 개별치료를 받는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하되, 경우에 따라 소그룹 집단치료도 가능하도록 가변성을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필요시 외부에서 치료실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설치하되, 프라이버시의 보호나 치료 중 집중이 필요한 경우 내부에서 선택적으로 가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방음 성능을 갖춘다.

· 교사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공간과 가구를 제공한다.

· 각 치료에 필요한 도구들을 수납하고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 이용자의 심리상태 및 갑작스런 신체적 증상 등을 교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테이블의 상판을 유리로 마감할 수 있다.

물리치료실

·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감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비와 공간을 계획한다.

· 공간 배치 시 외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심리적 치유효과를 도모한다.

· 필요한 기기 및 기구를 수납할 수 있는 창고를 계획한다.

·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침대 등에서 치료요법을 받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칸막이를 설치한다.

· 치료나 훈련을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간단한 업무를 보고 자료 및 개인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직원공간을 마련한다.

· 직업훈련실

·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작업대 및 기기들의 하부를 비워 둔다.

· ··작업공간과 작업물 적재공간의 면적을 충분히 확보한다.

· ··작업물의 이동을 고려하여 카트 등이 통행하거나 회전하기 쉽도록 통로의 폭이 충분해야 한다.

· ··작업물을 출하하기 용이하도록 외부의 탑재공간과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작업물을 반입하고 출하하기에 용이하도록 문은 최소 1200m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한다.

· ··문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단에 킥 플레이트 (kick plates)를 설치한다.

·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버튼 없는 자동문을 설치한다.

· ··단, 자동문의 센서에 감지될 정도로 작업공간이 문 주변까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버튼이

직업훈련실

·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작업대 및 기기들의 하부를 비워 둔다.

· 작업공간과 작업물 적재공간의 면적을 충분히 확보한다.

· 작업물의 이동을 고려하여 카트 등이 통행하거나 회전하기 쉽도록 통로의 폭이 충분해야 한다.

· 작업물을 출하하기 용이하도록 외부의 탑재공간과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작업물을 반입하고 출하하기에 용이하도록 문은 최소 1200m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한다.

· 문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단에 킥 플레이트 (kick plates)를 설치한다.

·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버튼 없는 자동문을 설치한다.

· 단, 자동문의 센서에 감지될 정도로 작업공간이 문 주변까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버튼이있는 반자동문을 설치하거나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고 밀어서 열 수 있는 도어 체크가 장치된 여닫이 문을 설치한다.

· 버튼이 있는 반자동문을 설치할 경우, 양손으로 작업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발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200-250mm 높이에도 버튼을 추가로 설치한다.

체력단련실

·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운동기구의 간격에 유의하고,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다양한 실내스포츠를 겸용으로 이용할 경우, 각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계획하고, 이동 및 재배치가 용이하도록 한다.

· 샤워 및 탈의실과 인접하여 설치한다.

4 관리 및 서비스 공간

기본 원칙

· 화장실, 엘리베이터, 상담실, 위생공간 등은 인접배치하여 동선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 관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별도의 휴식공간, 탈의실, 화장실 등을 계획한다.

· 이용자가 편히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배치하고, 업무와 상담 기능을 분리하여 영역을 구분한다.

일반

· 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을 목록화 하여 연관되는 활동끼리 근접하게 공간을 구성한다.

· 프로그램 접수, 안내공간, 관리공간, 사무공간, 상담실 등의 배치는 이용자가 찾아가기 쉬우면서도 직원이 관리하기 효율적인 동선으로 계획한다.

· 식자재, 소모품 등의 입 반출 동선은 시설 이용자 동선과 분리하되, 직원의 동선과 물품 흐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유리로 된 미닫이 창을 계획하여 외부공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방문자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관리 및 사무실은 필요시 가구 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바닥에는 미끄럼과 눈부심 방지를 위한 재료로 마감하고, 강한 패턴이나 과도한 색채 및 톤 대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 직원 및 종사자의 휴식공간을 별도로 확보한다.

사무공간

· 시설관리나 방문객 대응을 위해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며, 카운터를 설치한다.

· 방문객 대응을 위한 카운터, 사무 책상, 의자, 서류 고, 금고,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등을 설치할 면적과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회의실, 직원교육실, 시설장실, 상담실 등과 인접 배치하여 상호 효율성 있는 연계를 고려한다.

· 방문자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담공간을 계획하며, 방음에 유의한다.

· 정원, 데크 등 외부와 연결되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편의공간

· 자원봉사자를 위한 휴게실, 탈의실을 계획한다.
· 자원봉사자나 직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에는 테이블, 소파, 탕비 공간 등을 계획한다.
· 직원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계획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옷을 갈아입고,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탈의공간을 제공한다.
·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원실과 겸용으로 계획할 수 있다.

청소관리공간

· 걸레 등 작은 손빨래가 가능한 공간 및 설비를 고려하고, 시설 내 다양한 비품과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창고를 별도로 계획한다.
· 청소직원의 편의공간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자나 직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탕비공간

5 화장실 및 욕실

인지하기 쉬운 색과 픽토그램이 적용된 화장실 문

기본 원칙

· 다양한 이용자가 모두 접근 가능한 화장실을 계획한다.
· 이용자의 신체 크기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높이와 위치, 손잡이 등을 계획한다.
· 충분한 공간을 계획하고, 요소들간의 명확한 시각적 대비를 강조한다.

[화장실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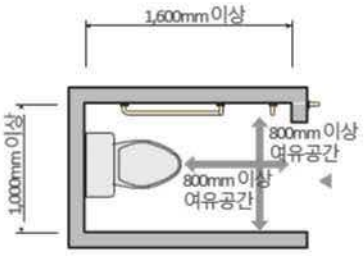

보행이 가능하며 혼자서도 이용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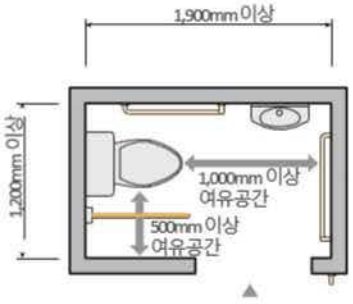

보행이 가능하나 약간의 도움을 받아 이용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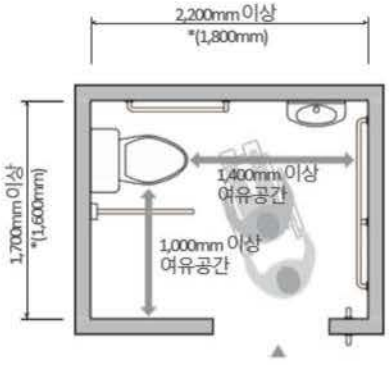

휠체어 사용자로 일부 도움을 받아야 이용 가능한 경우
*()안의 치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에 제시한 치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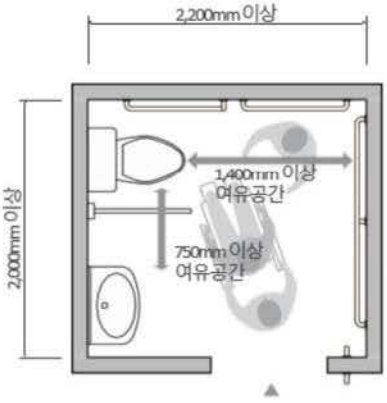

휠체어 사용자로 2인의 도움을 받아야 이용 가능한 경우

화장실

-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을 계획한다.
-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이용하기 쉬운 화장실을 계획한다.
- 아동의 이용이 많은 층에는 최소 1개의 아동용 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며, 남녀화장실 내부에 모두 공통으로 설치한다.
- 일반 화장실 부스는 1000x1300mm으로 설치하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노인이나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여유 있는 면적 (최소 1000x1600mm)으로 설치하여 장애인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을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공용화장실은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각 프로그램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 변기, 손잡이, 각종 설비 등 세부 디테일을 고려한다.
- 화장실문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미닫이문, 접이문, 자동문 등을 설치한다.
- 화장실문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고 잠금 장치를 설치하되, 위급 시 밖에서도 열 수 있어야 한다.
- 화장실문은 벽과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여 화장실 임을 인지하기 쉽도록 계획한다.
- 대변기의 좌측면은 겨울철 온도변화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도록 난방기능이 있고, 안정된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등받이가 있는 것을 설치한다.
- 세정버튼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도 누르기 쉬운 큰 버튼을 설치하며, 자동센서식의 경우 버튼과 사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변기 주변에는 지팡이를 걸쳐 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한다.
-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시설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 재료와 색을 선택한다.
- 안전을 위해 급탕 수전은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기울어진 거울은 서서 보는 사람에게 불편하므로 바닥으로부터 약 650mm 높이에 거울을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나 서서 보는 사람 모두 볼 수 있도록 한다.
- 다목적화장실의 경우,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하여 간단히 세정할 수 있는 샤워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세정 시 잡고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손잡이와 탈의를 위한 깨끗한 바닥과 옷걸이를 설치한다.
- 다목적화장실이 없는 경우, 세정 및 샤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1개의 세면대는 연장형 수전으로 설치하며, 휠체어에 앉아서도 손이 닿기 쉽게 설치한다.
-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 손잡이나 손씻기 등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장애인 화장실은 최소 폭 1800 x 길이 2500mm 의 면적을 확보한다.
- 손잡이는 인지하기 쉽도록 주변과 대비되는 색으로 선택한다.
- 손에 닿기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약 600mm 높이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한다.
- 급격한 체온변화가 없도록 탈의실과 연계한다.
- 욕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며, 목욕 전후 체온유지를 위해 난방에 유의한다.
-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세면대를 설치하며, 면적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인접하도록 한다.
-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0-1200mm로 한다.

화장실 큐비클문은 벽과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여 인지하기 쉽도록 계획

욕실 및 샤워실

· 욕실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욕실 사용 유무확인 인식장치를 설치한다.

· 안전하고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한 욕실로 계획한다.

·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의 색채와 마감재로 선택한다.

· 바닥난방을 설치하여 겨울철 온도유지와 건조가 용이하도록 한다.

· 규모가 큰 욕실보다 소규모 욕실을 다수 확보한다.

· 자원봉사자가 혼자서 목욕하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의 목욕 수발을 들기 쉽도록 계획한다.

· 최소 두 방향에서 직원이 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 사용자도 혼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대응용 욕조를 설치한다.

· 와상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기계욕실은 시선이 천장에 머물고 있으므로 천장계획 및 조명 설치에 유의한다.

· 욕조, 샤워기 등 세부 디테일에 주의한다.

·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의자를 배치하되, 벽 부착식보다는 이동식 샤워의자를 설치한다.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샤워의자를 설치한다.

· 욕조의 높이는 드나들기 쉽도록 4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욕조의 출입을 도울 수 있는 보조의자의 좌면 높이는 욕실바닥으로부터 욕조의 높이와 같아야 한다.

· 수전은 레버식 혹은 센서식으로 설치하며, 냉·온수 구별이 알기 쉽도록 하고, 온도고정장치를 설치한다.

· 샤워수전은 샤워기로의 변환이 쉽고 상태를 알기 쉬운 것으로 설치한다.

· 앉아서 높낮이 조절이 쉬운 샤워 수전을 설치한다.

· 욕실 내에서의 이동과 욕조 출입을 도울 수 있는 수평손잡이는 바닥으로부터 800mm 정도에 설치한다. 수직손잡이는 길이 600mm 이상으로 설치한다.

화장실문에 픽토그램 적용

가족 화장실

· 가족 화장실은 한 개 이상의 변기(프라이버시 스크린은 선택 사항), 어린이와 성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높이의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한 대 이상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기저귀 교환실은 유니섹스(unisex)로 남녀 성인이 모두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용 테이블을 하나 설치하는 것은 사용과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한다.

· 높이가 다른 (800mm, 1200mm) 테이블 2개와 벤치 2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키 높이에 따른 접근성을 높인다.

· 세면대와 건조설비, 기저귀 쓰레기통, 개인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테이블 등을 기저귀 교환 테이블 근처에 배치한다.

수유실

·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유실은 화장실과 분리하여 계획한다.

· 수유실은 편안한 의자, 유모차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 기저귀 교환대 등을 구비한다.

빛조절을 위해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와 푹신한 소파를 제공 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강조한 수유실

세면대

· 세면대는 변기에 앉은 상태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휠체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략 450x300mm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단, 공간이 넓어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큰 규격의 세면대를 제공한다.

· 세면대, 비누, 종이타월 등은 앉은 상태나 서 있을 때 모두 손이 닿는 높이에 배치한다.

· 세면대는 하단부 구조가 휠체어 사용자가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인 것을 제공한다.

· 세면대 수도꼭지는 하나의 레버로 작동하는 1홀 세면 수전 (single mixer tap)을 설치한다.

· 세면대 수도꼭지는 세면대의 정중앙에 배치할 경우 소변통을 씻기 어렵기 때문에 세면대의 변기 가까운 쪽 측면에 배치한다.

· 세면대의 높이는 850mm 정도로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최소 650mm 이상 무릎공간을 비워 둔다.

· 세면대의 형태는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세면대 앞부분에 몸을 기댈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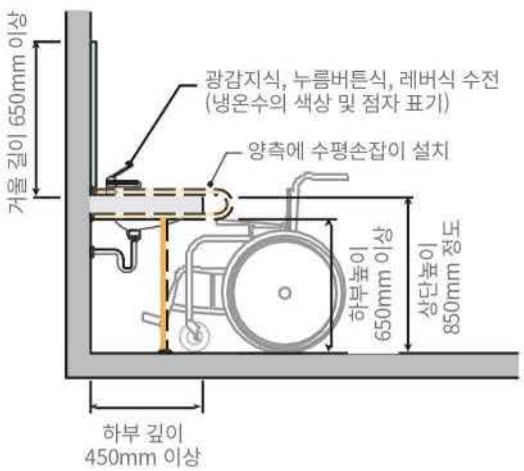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손잡이와
리듬감이 느껴지는 벽면의 패턴

변기

· 양변기 세정장치나 휴지걸이 등은 변기에 앉아서도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하고 세정장치는 쉽게 눌러 사용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모든 양변기 칸막이의 출입문에는 청각장애인의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양변기 칸막이는 최소크기가 1400mmx1800mm이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의 회전활동을 고려하여 칸막이를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변기의 설치 위치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칸막이 내부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휠체어 사용자의 회전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양변기 칸막이가 큰 경우라도 변기설치의 위치는 한쪽 벽에 가까이 설치하여야 하며, 벽측에 수직 및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옮겨 앉기 위해서는 양변기 한쪽 측면의 손잡이가 반드시 회전형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그림과 같이 양변기 측면에 750m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면으로 접근하여 양변기에 앉기 위해서는 양변기 전면에 1400x1400mm의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 변기는 휠체어 사용자가 변기로 이동할 때 안정적인 지지와 원활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벽면에서부터 750mm의 길이를 확보한다.

· 변기 좌석은 다양한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편하게 뒷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폭이 넓은 제품을 선택한다.

· 변기는 벽에 고정된 것보다는 바닥에 부착된 형태가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변기의 하단부에 사용자가 다가설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형태로 제품을 선택한다.

· 변기 물탱크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사용자가 변기 착석시 등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패드가 부착된 등받이를 별도로 제공한다.

· 변기 손잡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로 이동 후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벽 쪽이 아닌 휠체어 이동 방향으로 부착하고, 주걱처럼 끝이 크고 둥근 형태의 손잡이를 사용한다.

· 벽에 변기 물내림 버튼을 부착할 경우 주먹이나 팔꿈치 등으로 살짝만 눌러도 작동할 수 있는 푸시(push) 버튼을 사용한다.

· 버튼은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로 이동 후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조명

· 세면대 거울 위에 벽부등을 부착하여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피부색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색온도가 높고, 연색성이 좋은 조명으로 계획한다.

· 램프의 교환을 비롯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욕조의 상부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 스위치는 문 밖 인접 벽에 설치하여 불을 켠 후 밝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조명기구는 내수성 제품을 사용한다.

사인

- 어디에서나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방향유도사인에 화장실 픽토그램을 포함한다.
- 화장실 사인은 모두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혼란스럽지 않다.
- 화장실 입구에 부착된 화장실 사인은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벽에 부착되는 사인 뿐 만 아니라 문이나 벽에 픽토그램을 크게 적용하여 화장실에 대한 인지를 높일 수 있다.
- 남녀 구분은 누구나 알기 쉽고 차이가 명확히 구별되는 픽토그램을 이용해야 하며, 영문 표기(W, M 등)로 구분하는 것은 피한다.
- 남녀를 구분하는 색채는 색각 구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붉은 색을 최소화하고, 노란 색을 포함한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녀를 구분하는 색채적용범위를 넓게 하여, 픽토그램이나 사인물을 보지 않고도 색만으로 남녀 화장실을 직관적으로 찾아 들어가기 편리하도록 한다. 남녀화장실의 출입문 틀이나 주변 벽 등 넓은 면에 색을 적용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일 수 있다.

픽토그램과 색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 화장실

비상시 대피를 위해 모이는 장소를 붉은 삼각형으로 유리창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 사인

7
특화 공간

1. 특화 공간 132
2. 치유 공간 136

1 특화 공간

기본 원칙

·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소방기관과의 연계체제를 확립한다.

· 비상시 대피가능한 양방향 피난로와 피난공간을 확보한다.

· 서로 다른 이용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피 경로와 방법을 계획한다.

일상적 사고 방지

· 일상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계획, 방재계획을 확립한다.

· 낙상이 주로 발생하는 화장실, 복도, 욕실에는 특히 단차 제거, 손잡이 설치, 불필요한 돌출물 제거, 모서리가 둥근 가구 사용 등을 고려한다.

· 섬유제품의 커튼이나 침구류는 방염처리를 하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 원활한 통행을 위해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 사고방지를 위해 단차를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날카로운 모서리 등은 둥글게 마감한다.

· 충분한 문 폭을 확보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일반 성인보다 키높이가 낮은 아동과 장애인의 높이에서의 돌출물 등을 만들지 않는다.

· 낙상 등 사고방지를 위해 단차, 돌출물, 모서리를 제거한다.

· 낙상이 많이 발생하는 화장실, 복도, 욕실에는 불필요한 단차, 돌출물, 모서리를 제거하고, 적절한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는 20mm의 턱도 쉽게 넘지 못하므로, 단차를 제거한다.

· 정원이나 발코니 등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에도 단차를 제거한다.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복도 등 이동경로에는 보행장애물을 두지 않고, 소화기 등도 매립식으로 설치한다.

방재 계획

· 마감재, 가연물 등의 화재방지, 연소확대방지 대책을 확립한다.

· 착화물이 될 수 있는 섬유제품의 커튼이나 침구류는 방염처리를 철저히 하고, 불연성능이 있는 내장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흡연장소 제한이나 금연건물 지정, 린넨 등 가연물 보관창고의 잠금장치 철저 등 관리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갖추고, 소방기관과의 연계체제를 확립한다.

· 화재 발생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소방기관에 통보되는 비상통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는 이용자들이 있으므로 화재 발생 초기단계에 작동하는 신뢰성이 높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 비상연락장치는 주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에 설치한다.

· 사용자 조작능력의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손의 도달거리, 좌우측 편마비 등 설치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비상시 각 실 안에서도 해당 층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 내부에 층 수를 알려주는 사인을 부착한다.

· 비상계단 이용시 문 앞뒤로 층수를 기재하여 비상시 즉각적으로 해당층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비상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곳에 눈에 띄는 색으로 위치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대피시 신속하게 집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건물 내의 공간 배치와 비상구, 소화기, 구조손수건 등의 위치를 지도와 스티커로 제작하여 직접 사용자가 체험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상시 물이 분사되어 실 안에서 일시적으로 대피가 가능한 장치

피난 계획

· 화재 등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경로와 대피장소를 확보한다.

· 장애 유형에 따라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므로 대피 관련 정보는 가능한 한 시각, 청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 화재 발생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경로와 안전한 방화구역을 확보하며, 가급적 피난계단이나 옥외 발코니로 통하는 피난 발코니를 설치한다.

· 화재 등의 비상시 아동이 직접적으로 정원, 테라스, 발코니 쪽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출입구와 동선을 계획한다.

· 법적 방화구획 기준(3층 이상과 지하층의 층마다) 이상으로 방화구획을 설정하여, 같은 층에서 수평피난이 가능하고 화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 (스프링 쿨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3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한다.

· 화재 시 피난경로는 반드시 양방향을 확보하며, 막다른 복도에는 발코니 등을 설치하여 피난 탈출구를 확보한다.

· 일시 대피장소의 피난 발코니는 건물 내부의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여러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피난경로의 복도 등에는 연기가 차지 않도록 배연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한다.

· 비상 대피시 신속하게 문을 밀어서 열 수 있도록 가로로 긴 핸들, 레버 핸들 등을 설치한다.

· 동작 한번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잠금장치는 해제해둔다.

· 비상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내화성 구조(fire-resisting enclosure)와 독립적인 전기 공급 시스템을 갖춘다.

· 알람 시그널은 소리가 너무 클 경우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120dB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소수의 음량이 큰 알람을 배치하는 것보다 음량이 다소 작은 알람을 여러 곳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주변 환경과 시각적으로 대비를 명확하게 이루는 색채로 신속한 인지가 가능하고,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성을 높인 대피공간

· 알람은 시각과 촉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고, 시각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인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시각 경보는 발광신호가 가구나 파티션 등으로 가리지 않도록 위치를 고려한다.

· 시각 경보는 사용자의 혼란과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광신호의 간격은 2-4hertz 사이로 계획한다.

유리파괴장치 (Break Glass Unit)

· 사용자가 유리파괴장치(소방관이 화재시 유리창을 쉽게 파괴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에 접근하기 위해 주변 바닥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900mm의 폭이 접근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유리파괴장치는 한 손 또는 팔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유리파괴장치는 주변 배경과 대비되는 색(green 권장)으로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해야 하며, 비상구 주변에 배치한다.

· 유리파괴장치 도구는 작동이 쉬워야 하고 모든 사용자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 유리파괴장치는 바닥에서 900-1200mm 높이, 코너에서부터 500mm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

· 건축 설계시 건물의 큐모와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유리파괴장치의 수요를 예측하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한다.

복도에 설치되어 비상시 투척하는 액상형 소화기

신속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제작한 비상벨

비상시를 대비한 구조 손수건

2 치유공간

기본 원칙

· 시설 내외부에 자연과 접할 수 있고, 지역 주민과 연계 및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계획한다.
· 친목과 휴게, 교류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가구와 설비를 제공한다.
· 모든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일반

· 정서적으로 쾌적한 음환경을 위해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원 등을 설치한다.
· 정원은 지역사회와의 융합이라는 의미로, 지역에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계획해야 한다.
· 부지에 여유가 있다면 시설과 분리하여 정원에 카페 등을 구성한다.
· 전시, 장터, 공연 등 다양한 지역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홀, 광장과 같은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 건물 주변으로 적절하게 식재하여 채광과 그림자, 소음, 바람 등의 실내 유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외 공간은 사회화와 프라이버시,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의 휴식과 신체활동 등의 활동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로 구성한다.
· 정원은 공간에 대한 조망, 적절한 울타리와 물리적인 안전, 알맞은 기후, 융통성 있는 의자 등이 필요하다.
· 옥외정원은 모두가 접근이 쉽도록 동선상 장애를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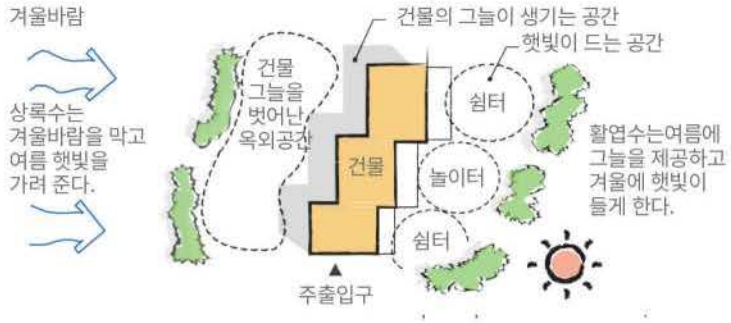

대지의 기후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건물의 방향 및 식재, 울타리, 보행로 등을 계획해야 함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며, 처마를 제공하여 우천시에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옥외 휴게공간

단차없이 바닥을 마감하고, 가림막 설치 및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좌석 배치를 고려한 옥외 휴게공간

· 정원은 현관(출입구)이 있는 층에서 문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계획하되, 800-850mm의 유효폭을 지닌 문과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한 입구로 설계한다.

· 정원에 식물은 이용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선정한다. 예를 들어, 시각 또는 인지장애인을 위해서는 바람에 따라 나뭇잎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식물, 향이 강한 식물, 새나 벌레가 모여드는 꽃, 작은 분수 또는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는 풍경 등으로 다양한 소리와 향을 지닌 식물 위주로 선택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색이 다양한 꽃, 바람에 의한 잎사귀의 움직이는 형태, 식물의 질감, 거울과 물을 이용한 반사 등 시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식물과 향이 강한 식물 등을 선택한다.

· 정원 내의 보행로는 900-1200mm의 폭으로 바닥에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하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한다.

· 강한 햇빛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퍼골라, 캐노피 등의 그늘막을 설치한다.

· 휠체어 이용자가 조경 감상 및 원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식물은 바닥면에서 300-750mm 높이로 돋음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가능한 주변에 이용자가 잠시 앉을 수 있는 좌석공간을 돋음판의 양 측면에 제공한다. 이 때 나머지 두 면은 휠체어로 식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좌석을 설치하지 않는다.

· 식물 돋음판을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큰 화분에 식재한 식물로 대체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정원 내에는 램프와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바닥은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한다.

· 조경감상,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빨래 건조 등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빨래건조를 위한 빨랫줄을 다양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고리를 제공한다.

경험적 공간의 제공

· 대비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흥미로운 장소를 조성한다.

· 공간의 성격에 따라 '안과 밖', '위와 아래', '밝음과 어둠' 등의 대비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 대비되는 공간들은 서로 분리하되 창, 출입구 등을 두어 연결하고 그 사이에 전이공간을 둠으로써 더욱 활기 있게 공간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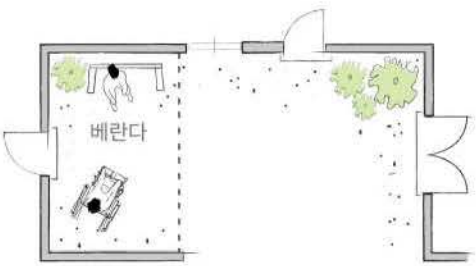

2~3개의 공간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캐노피와 의자를 두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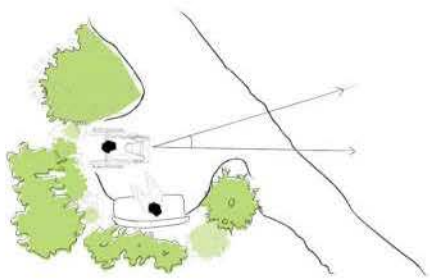

이동동선 상에서 물러나되 다른 활동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된 실외공간으로 휠체어 사용자와의 동반을 고려하여 빈 공간을 확보함.

발코니/테라스

- 이용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개별 정원 또는 발코니/테라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발코니와 테라스는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하고 최소 1500-1800mm의 깊이를 확보한다.
- 1인당 최소 5㎡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수에 따라 2㎡씩 증가하여 총 면적을 계획한다. (예, 2인 공간은 7㎡, 3인 공간은 9㎡)
-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발코니로 나가기 전에 미리 불을 켜고 끌 수 있도록 실 내부 출입구 근처에 스위치를 설치한다.
- 이웃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다.
- 바닥면은 미끄럼방지 기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마감하고, 바닥에 배수구를 설치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난간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안전손잡이는 겨울철 사용시 차가운 온도를 고려하여 목재나 코팅된 금속재를 사용한다.
-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1500mm의 회전반경을 확보한다.
-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리패널을 설치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통유리창으로 계획한다.
- 옥외공간의 통로 조명은 보행로를 밝히는 것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램프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계단이나 경사가 심한 곳의 조명설치에 유의한다.
- 옥외 조명기구는 기후, 온도, 오염에도 강한 것으로 선택한다.

이용자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된 화단

조경

- 식재공간을 건물 외벽이나 울타리 경계선을 따라 계획하여 시설의 외관에 부드럽고 친숙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 건물 주변에 조경을 계획할 경우, 돌, 바위, 석재 등의 단단한 요소와 식물, 잔디, 나무, 관목, 연못 등의 부드러운 요소를 조화롭게 이용하여 다양한 자연의 형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식재하여 아동에게 안정감 있고, 다양한 감각을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건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예-계절 식물, 색이 다른 꽃을 피우는 식물 등)
- 낮은 높이의 식재를 통해 보호자의 자연스러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물의 경계선을 따라 형성된 공간 내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눈에 띄는 선명한 색상을 지니거나 향이 강한 식물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길안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식물은 소음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
- 식물 사이에 움직이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아동이 적극적으로 조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울타리 철망에 접하여 식재를 할 경우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외관 이미지를 완화시킬 수 있다.
- 조경은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로를 침범하여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색이 선명하거나 향이 있는 식물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공간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색채와 향을 고려하여 계절에 따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된 옥상정원

스마트 시니어
IT체험존

부록

1. 관련 법규 및 규정 144
2. 참고사례 및 인터뷰 166
3. 체크리스트 170

1 관련 법규 및 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관련)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 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이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 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3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턱 낮추기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1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유효폭	
1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손잡이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이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성 확보	
1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유효폭	
1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 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7.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크기	
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용자 조작 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이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 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경사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디딤판과 챌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1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 일반사항

설치장소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재질과 마감	
1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2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1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활동공간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구조
1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
1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3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5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설비	
1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 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 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변기

기타설비	
1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손잡이	
1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면대

구조	
1	휠체어 이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손잡이 및 기타 설비	
1	목발이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이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 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장소	
1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 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1	욕조 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장소	
1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1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점자블록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3.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비상경보등·피난구 유도등	
1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14.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 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 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음성안내장치	
1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기타 유도 신호장치	
1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활동공간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설치장소	
1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 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구조	
1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객실 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 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닥	
1	객실 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1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 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가목(2)(가) · (3)(나), 나목(1)부터 (3)까지 · (4)(가), 라목 및 제14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 등에는 건축물 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설치장소	
1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영화관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 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6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 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닥	
1	열람석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활동공간	
1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1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공간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이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설치장소	
1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이용자 조작 설비	
1	동전 또는 전화카드 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1	지팡이 및 목발이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안내표지기준 (제3조)

안내 표지 기준	
1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5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작도법

출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665호, 2019. 10. 24 시행)

1. 안전 및 대피

	직통계단
1	3층 이상의 층으로 해당 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한다.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한다.
	방화구획
1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2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이내마다 구획한다.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소화기구
1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
1	연면적 3,000㎡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	
1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설비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2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 이상
3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시설
4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400㎡ 이상
5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 500 ㎡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6	시각경보기 : 연면적 400㎡ 이상
7	가스누설경보기 : 모든 시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모든 층 (피난층, 지상1, 2층, 11층 이상은 제외)
2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 모든 시설
3	비상조명등 :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연면적 5,000 ㎡ 이상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 :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 이상
3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 ㎡ 이상

2 참고사례 및 인터뷰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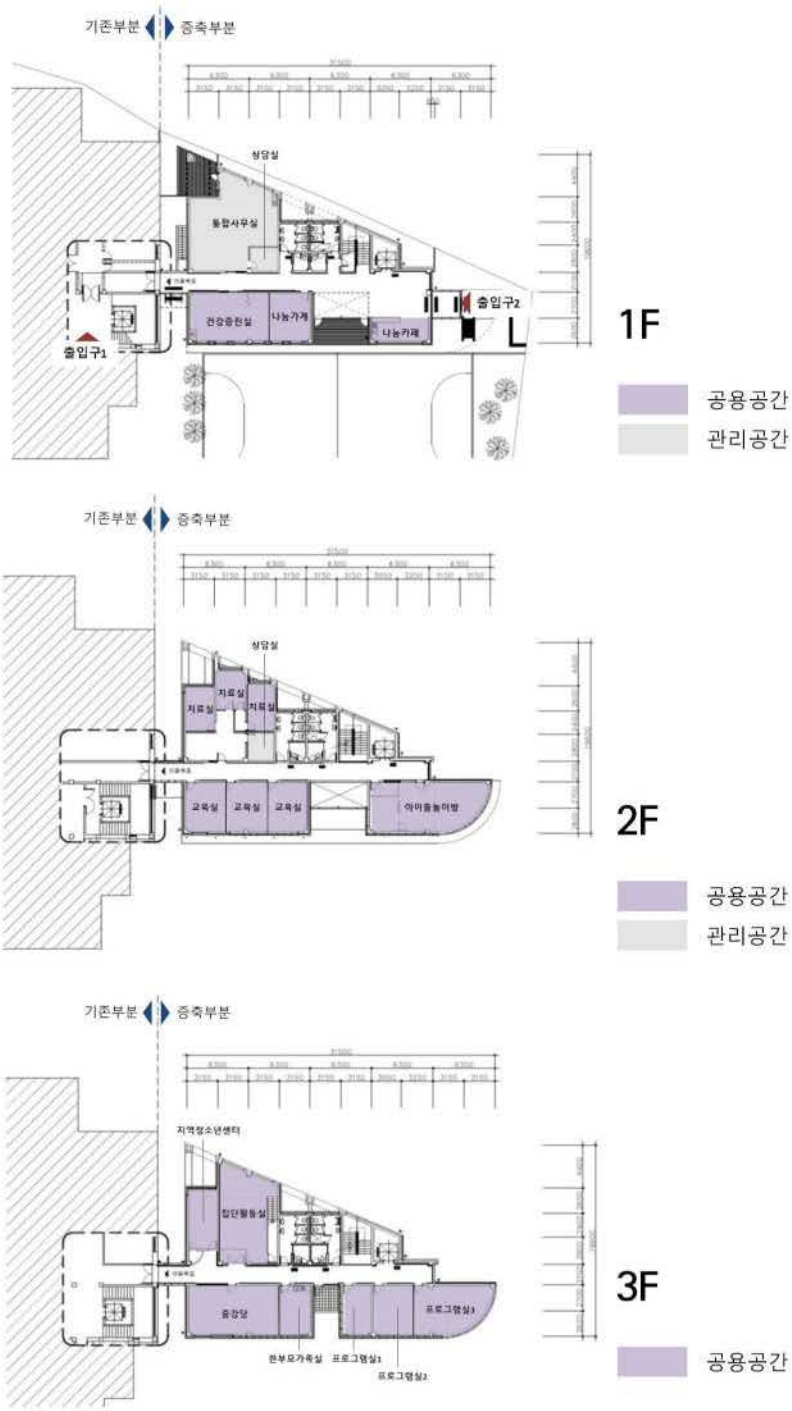

Q.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된 이용자는 누구이며, 이들이 지닌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A.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지닌 요구사항이 각기 다르며, 이를 한 시설 내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위치한 입지에 따라서 이용자의 유형과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계획에 있어서 획일적인 정책이나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적으로 임대단지 내에 위치하는 경우와 일반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로 나뉩니다. 입지에 따라서 시설을 방문하는 주된 이용자의 유형이 달라지며, 이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동일한 기능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성은 지역주민들이 소모임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관계 중심의 교류가 가능한 공간의 제공이 복지관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주민의 선호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실은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3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주민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과 사업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향후 공간의 다기능화를 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상호 교류를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복지관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소규모로 모임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1F

공용 공간
프로그램 공간
관리 및 서비스 공간

2F

공용 공간
프로그램 공간
관리 및 서비스 공간

3F

공용 공간
프로그램 공간
관리 및 서비스 공간

4F

공용 공간
프로그램 공간
관리 및 서비스 공간

Q.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 계획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그 특성도 매우 다양하여 이들이 지니고 있는 요구사항 역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한정된 공간 내에서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능만을 위한 전용공간을 계획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용도를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원수에 따라서 공간이 축소 또는 확장 가능한 형태로 프로그램실이 계획된다면 공간활용도가 높아져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루었다가, 최근에는 어린이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노인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구조와 기능에서 한계를 지녀 제대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특정한 기능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지정해서 계획하기 보다는 다양한 용도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구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운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은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매년 공간 부족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다목적실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매우 효율적인 해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실의 계획과 더불어, 복지관 내에 휴게공간 또는 비어 있는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여 이러한 곳을 향후 필요에 따라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이 현재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나 향후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

A. 종합사회복지관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대부분 20-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로, 현재 많은 시설들이 노후된 설비와 좁은 공간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용자가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시급한 부분들만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전층 운행이 불가하거나, 더 이상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실의 유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 여러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복지관은 초고령사회의 진입 및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복지관 역시 현재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건물의 기능과 외관, 구조 등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노후된 건물의 신축과 개보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초고령장애노인들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내에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1층 입구에서부터 명확하게 동선을 분리하고 단순 명료하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체크리스트

[기본]

시설적 느낌의 최소화	평가		개선할점
1.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용자를 압도하지 않는 휴먼스케일로 계획되어 있다.	O	X	
2.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O	X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고려	**평가**		**개선할점**
3. 다양한 이동수단과 방법으로 방문하는 각 이용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다.	O	X	
4.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 특성을 배려하고 있다.	O	X	
5. 언어, 지적능력, 연령에 관계없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	X	
안전한 환경	**평가**		**개선할점**
6. 원활한 통행과 사고방지를 위해 단차, 돌출물 등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고 있다.	O	X	
7. 비상시 경보시스템 및 사인정보물, 대피로와 대피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O	X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평가**		**개선할점**
8.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경보시스템 및 사인정보물, 대피로와 대피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O	X	
지역사회와의 소통	**평가**		**개선할점**
9. 산책로, 카페, 식당과 같은 지역사회에 개방된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O	X	
10. 전시, 장터, 공연 등 다양한 지역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O	X	

[공간구성]

공간구성 원리	평가		개선할점
1. 프로그램 실의 배치와 공간의 이용이 효율적이다.	O	X	
2. 복도 중심의 획일적 공간구성이 아닌 각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O	X	
3. 다양한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각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동선을 계획하고 있다.	O	X	
4. 지역의 활기를 느끼고, 세대간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등을 계획하여 감성적으로 즐거운 공간이 되고 있다.	O	X	

[세부공간]

출입공간	평가		개선할점
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단차와 기울기가 없는 평탄한 진입로이다.	O	X	
2. 진입로에 보행로와 차도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있다.	O	X	
3. 주차장의 승하차 공간은 유모차, 휠체어 등이 내리기 쉽다.	O	X	
4. 일시적으로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O	X	
5. 승하차공간에서 주출입구까지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캐노피 등의 차양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O	X	
6. 주출입구는 여유있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다.	O	X	
7. 주출입구와 로비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친숙한 분위기이다.	O	X	
8. 안내데스크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높이와 구조로 되어 있다.	O	X	
프로그램공간	**평가**		**개선할점**
9.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O	X	
10.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실의 경우, 방음에 유의하여 계획되어 있다.	O	X	
11. 이동·운반·보관이 용이한 의자와 테이블로 계획되어 있다.	O	X	
12.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실의 경우, 편리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O	X	
13. 가방 및 소지품, 우산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O	X	
14. 각 프로그램의 이용 특성에 적합한 조명계획이 되어 있다.	O	X	
15. 환기가 용이하다.	O	X	
16. 도서실의 서가 및 도서검색대는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하고 있다.	O	X	
17. 미술활동실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가 용이한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다.	O	X	
18. 주간보호센터는 집과 같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자세로 휴식할 수 있는 소파 및 평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O	X	
19. 심리치료실은 친숙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각 치료(놀이, 미술, 음악)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O	X	
20. 직업훈련공간은 작업공간이 충분하고, 작업물의 이동을 고려하여 카트가 통행 하거나 회전하기 쉽다.	O	X	
21. 물리치료실은 치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풍경조망 등의 주변요소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다.	O	X	

공용공간	평가		개선할점
22. 강당은 비상시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와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O	X	
23.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실과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옥외정원이 있다.	O	X	
24. 프로그램실 주변에 이용자와 동반자를 위한 휴게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O	X	
식사공간	**평가**		**개선할점**
25.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테이블 사이 간격이 충분하다.	O	X	
26. 청결·오물 동선이 명확하고 조리직원이 일하기 편리한 공간이다.	O	X	
위생공간	**평가**		**개선할점**
27.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뿐 아니라 영유아동반자가 기저귀를 갈거나 세정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로 계획되어 있다.	O	X	
28. 아동의 이용이 많은 층에는 최소 1개의 아동용 변기 및 세면대가 남녀화장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O	X	
29. 화장실 안내사인은 어디에서나 눈에 잘 띄고 찾기 쉽다.	O	X	
30. 노인이나 장애인의 목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목욕 수발을 들기 쉽도록 최소 두 방향에서 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O	X	
31. 욕실 및 샤워실은 급격한 체온변화를 줄일 수 있도록 탈의실과 인접설치하고, 난방이 잘 되어 있다.	O	X	
이동공간	**평가**		**개선할점**
32. 복도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다.	O	X	
33. 색채, 사인 등의 요소는 현재 위치와 방향을 알기 쉽고, 찾아가기 쉽도록 계획 되어 있다.	O	X	
34. 계단은 시작과 끝단, 계단코를 인지하기 쉽다.	O	X	
35. 엘리베이터는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리창이 있다.	O	X	
직원공간	**평가**		**개선할점**
36. 직원의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O	X	

참고자료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10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2019.06 개정)
: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 2 제 3항 관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2018.12 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018.02 개정)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편의시설의 안내표지기준(제3조 관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 보건복지부, 서울시 사회복지관 유형별 현황 (2018)
·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2021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 보건복지포럼, 장애노인 돌봄의 정책 도출 (2017)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종합사회복지관 (2011)
· 박영순, 이현주, 이명은 (2007), Color Design Project 14, 교문사
· Ireland, NDA, Center for Excellence in Universal Design, Building for Everyone : A Universal Design Approach (2012)
· Ireland, NDA, Center for Excellence in Universal Design, Universal Design Guidellines for Early Learning & Care (2019)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위해
인터뷰와 현장견학, 사진촬영을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ver 2.0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유 연 식
디자인정책과장	이 혜 영
유니버설디자인사업팀장	송 한 비
담당자	박 병 규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책임연구원	전 미 자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공동연구원	김 창 식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
	김 은 정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임 해 원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Copyrightⓒ 202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 Reserved.

문의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Tel. 02 2133 2728

비매품 /무료
13600
9 791165 991968
ISBN 979-11-6599-196-8